

UN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 제78차 회의 제출

대한민국 제5차 정기보고서 심의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합 쟁점목록 의견서

2025. 6.

대한민국 인권·시민사회단체 연합 (128개 단체)

참여 단체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경기이주평등연대(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경기결집, 노무법인약속,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도본부, 민주노총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 수원이주민센터,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동법률지원센터소금꽃나무, 지구인의정류장,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마중’,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307개 단체),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공익인권법재단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충남인권연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레드리본인권연대,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양심과인권-나무,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진보네트워크센터,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체육시민연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부들), 기업과인권네트워크(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국제민주연대, 기후해양정책연구소 코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좋은기업센터, 환경운동연합),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노조사회복지지부, 공무원노동조합,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난민인권센터, 노년유니온,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동자동사랑방, 민달팽이유니온,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대구),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부산반빈곤센터, 빈곤사회연대, (사)참누리,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해방열사‘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평화주민사랑방,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홈리스행동), 기후정의동맹(가가, 가톨릭기후행동,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기술공사지부, 교육공동체 벗, 교육농협동조합,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기후위기기독인연대,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 기후위기대응서울모임, 기후정의포럼, 노동해방 마중, 녹색정치 Lab 그레,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반대 전남연대회의, 다산인권센터, 대전기후정의모임, 대학생기후행동,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동물권단체 케어, 동물해방물결, 멸종반란 가톨릭, 문화연대, 발전비정규노조 전체대표자회의, 빈곤사회연대, 사회적협동조합 푸르메가 사는 지구, 사회주의를향한 전진, 삼척석탄화력반대 투쟁위원회, 삶과노동을잇는배움터 이짓,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성공회대 농림생태환경연구소, 세종보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솔방울커먼즈, 아름다운 붉은선, 아주 작은 페미니즘학교 탕자,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정의행동,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예술행동 한뼘, 우리가 만들어갈 세상은 언제나, 푸름,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삶과 일터 충북노동자시민회의, 음성노동인권센터, 음성민중연대, 이윤보다인간을,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공간 활, 자전거문화사회적협동조합, 장애여성공감, 전교조 충북지부, 전교조 울산지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녹색연합, 전환, 정치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지리산필름, 진보 3.0, 책빵고스란히, 천주교 작은형제회 JPIC 위원회, 청소년기후행동,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들,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 충북사람연대, 플랫폼C,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YMCA전국연맹, 행동하는 지역공동체 동서울시민의힘,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홈리스행동, 홍천군 송전탑반대 대책위, 홍천군 풍천리 양수발전소 건설 반대위원회), 난민인권네트워크(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NANCEN), 동두천난민공동체, 동두천가톨릭센터, 동작FM,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비영리단체 겨자풀, 사단법인 두루, 성가소비녀회 의정부관구 동두천 베타니아, 성가소비녀회 의정부관구 파주 베타니아, 수원글로벌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프,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 EXODUS, 이주민센터 친구, 천주교제주교구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여연대, 파주EXODUS, 한국이주민권센터), 난민인권센터, 무지개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블랙리스트 이후, 생명안전 시민넷,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세이브더칠드런,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아프면 쉴 권리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돌봄시민행동,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자권리연구소,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다른몸들,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마창거제산재추방연합, 민주노총법률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 보건의료단체연합, (사)김용균재단,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사)시민건강연구소, 사람과환경연구소, 생명안전 시민넷,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인권운동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 일터건강을지키는직업환경의학과약사회,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전국물류센터지부, 전국고속노동조합,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전남노동권익센터,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플랫폼노동희망찾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교수노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향남공감의원,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모두를위한이주민문화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센터동행,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살림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위프렌즈,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공동체),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친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민과함께, 이주와 인권연구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권리증심증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47개 단체), 주거권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평화주민사랑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장애포럼, 홈리스행동 (총 128개, 가나다 순)

목차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제2조 제1항).....	4
2. 12.3 내란상황과 사회권 침해 (제2조 제1항).....	4
3. 권리구제 접근성 (제2조 제1항).....	5
4. 코로나19 이후 긴급재정 및 고소득자에 집중된 감세정책 (제2조 제1항).....	6
6. 기업과 인권 (제2조 제1항).....	8
7. 기후위기와 취약계층 (제2조 제1항).....	9
8. 공적개발원조(ODA) (제2조 제1항).....	11
9.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2조 제2항).....	11
10.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제2조 제2항).....	12
11. 이주민/난민에 대한 차별 (제2조 제2항).....	13
12. 시설수용으로 인한 장애인 사회권 침해 (제2조 제2항).....	15
13. 홈리스 인권 침해 (제2조 제2항).....	17
14. 성평등 전담부처 (제3조).....	17
15. 여성에 대한 폭력 (제3조).....	18
16. 여성의 노동권 침해하는 페미니스트 사상 검증 문제 (제3조).....	19
17. 성별 임금격차 (제3조).....	19
18. 여성의 경력단절 (제3조).....	21
19. 여성의 정치대표성 (제3조).....	21
20. 장애인 공공일자리 폐지 (제6조).....	22
21. 자활사업 일자리 부족 (제6조).....	23
22. 기후위기와 일자리 전환 (제6조).....	23
23. 비정규직 고용불안과 차별 (제7조).....	24
24. 비정형 고용: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제7조).....	24
25. 이주노동 (제7조).....	25
26.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제7조).....	26
27. 최저임금 (제7조).....	27
28.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제7조).....	28
29. 파업권 (제8조).....	29
30. 노동조합 할 권리 (제8조).....	30

31. 기초생활보장 (제9조).....	30
32. 국민연금 (제9조).....	31
3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제9조).....	32
34. 돌봄 (제9조)	32
35. 상병수당 (제9조).....	33
36. 실업에 대한 사회적 보호 최저선 (제9조).....	34
37. 노인 (제10조).....	34
38. 아동학대 예방과 구제(제10조).....	35
39. 보편적 출생등록 (제10조).....	36
40. 미등록 이주아동 (제10조).....	36
41. 발달장애 가족참사(제10조).....	37
42. 홈리스 주거권 (제11조).....	38
43. 전세사기/공공임대주택 (제11조).....	38
44. 강제퇴거 (제11조).....	39
45.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을 통한 노점상 강제철거 (제11조)	39
46. 공공의료 강화 (제12조).....	40
47. 의료민영화 (제12조).....	41
48. 정신건강과 자살예방 (제12조).....	41
49. 재난참사를 비롯한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의 정신건강 (제12조).....	42
50. 성과 재생산권리 (제12조).....	43
51.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건강권 보장 (제12조)	43
52.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제12조).....	44
53. 학생인권 (제13조).....	45
54. 양질의 직업교육 (제13조).....	45
55. AI교과서의 도입 (제13조).....	46
56. 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 (제13조, 제14조).....	47
57. 외국인에 대한 편견 대응/문화다양성 촉진 (제15조).....	48
58. 문화계 블랙리스트/예술인 사회권 (제15조).....	49
59.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추모 (제15조)	50
60. 기술의 공공성과 빅테크 탈규제 (제15조).....	50

들어가며

대한민국 128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이하 ‘사회권위원회’)의 제78차 회의에서 대한민국 제5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위한 쟁점목록 채택에 앞서 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본 보고서는 2017년 제4차 심의 이후 한국의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규약’) 이행 현황과 주요 우려사항들을 다루고 있으며, 사회권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대한 심의에서 아래의 핵심 의제들을 쟁점목록에 포함하여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4차 심의에서 사회권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사항의 상당수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으며,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 이후 한국의 사회권 상황은 전반적으로 악화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전례 없는 사태로 정점에 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구조적 성차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여성가족부를 무력화시키고, 고소득층 중심의 감세정책을 통해 국제 수입을 15% 감소시켜 복지 재정을 축소했습니다. 그 결과 상위 10%와 하위 10% 간 소득격차는 2억 원 이상으로 확대되었고,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국제인권기준을 부인하는 인권위원들을 임명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켰습니다. 더 나아가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등을 통해 파업권을 제약하고, ILO 협약 제87호·제98호를 비준하고도 원청사용자와 하청노동자의 노동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주요 사회권 지표는 여전히 OECD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성별 임금격차 29.3%, 노인빈곤율 40.4%, 자살률과 산재 사망률 모두 OECD 1위를 기록 중이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여전히 제정되지 않아 성소수자, 이주민 등 소수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공공의료는 더욱 취약해졌으며, 비정규직 비율은 41.7%에 이르고,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 명을 넘으며 주거권 위기가 심화되었습니다. 정부는 시민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AI 교과서 도입을 강행하고, 문화예술인에 대한 블랙리스트 정책을 지속하는 등 교육권과 문화권 또한 후퇴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규약의 조항별로 다음과 같은 핵심 쟁점을 제시합니다.

- 일반의무(제2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 과정에서의 시민사회 배제, 비상계엄을 통한 사회권 침해, 사회권 구제절차 접근성 제한, 부자감세와 긴축재정으로 인한 복지예산 삭감,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훼손, 기업 인권실사 법제화 거부
- 비차별(제2조 제2항):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지연, 성소수자에 대한 지속적 차별, 이주민과 난민의 사회보장 배제, 장애인 시설수용으로 인한 사회권 침해, 홈리스에 대한 형벌화 조치 등 구조적 차별 문제
- 성평등(제3조): 여성가족부 무력화, 비동의 강간죄 도입 철회, 페미니즘 사상검증으로 인한 여성 노동자 차별, OECD 최고 수준의 성별 임금격차(29.3%), 여성의 경력단절과 정치대표성 부족
- 노동권(제6-8조): 장애인 공공일자리 폐지, 자활사업 일자리 부족, 기후위기 대응 일자리 전환 미흡, 비정규직 고용불안(41.7%), 특수고용 노동자 권리 보호 부재, 이주노동자 강제노동, 근로기준법 적용 사각지대, 최저임금 차별 적용, OECD 1위 산재사망률, 파업권과 노조할 권리 제약
- 사회보장(제9조): 빈곤율(14.9%) 대비 매우 낮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5.3%), 국민연금의 미성숙 및 광범위한 사각지대, 매우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64.9%), 돌봄의 국가책임 방기, 상병수당 제도 미도입, 실업급여 사각지대

- 가족과 아동(제10조): OECD 최고 수준 노인빈곤율과 자살률, 아동학대 발견을 하락과 구제시스템 미흡, 보편적 출생등록 법제화 지연, 미등록 이주아동 권리 보장 부재, 발달장애 가족참사 지속
- 주거권(제11조): 전세사기 피해, 강제퇴거 예방 대책 부재, 노점상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통한 생계권 침해
- 건강권(제12조): 공공의료 예산 삭감과 민영화 추진, OECD 1위 자살률, 성과 재생산권리 후퇴, 사회적 소수자 의료접근성 제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건강권 우려
- 교육권(제13-14조): 학생인권조례 폐지, 양질의 직업교육 부재로 인한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시민사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AI교과서 강행 도입, 사교육비 증가(월평균 47만 4천원)로 인한 교육불평등 심화
- 문화권(제15조): 이주민 혐오 확산과 문화다양성 정책 부족,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지속, 중대한 인권침해 관련 문화재 보호 미흡, 빅테크 플랫폼의 알고리즘 편향과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

이 보고서는 제4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심의 이후 악화된 사회권 상황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함께, 각 조항별 이행 방안을 제시합니다. 사회권위원회가 제78차 회의에서 이 핵심 쟁점들을 쟁점목록에 포함시켜 한국 정부의 규약 이행 상황을 면밀하고 체계적으로 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위원회의 엄정한 심의와 권고가 한국 정부로 하여금 사회권규약 당사국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견인하고, 모든 사람의 존엄성과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실효적이고 구속력 있는 조치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제2조 제1항)

정부는 제3차 NAP(2018-2022) 수립에 시민사회의 의견은 물론 사회권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반영하지 않았으며, 성소수자 권리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미등록 이주민을 ‘불법체류외국인’으로 표현하여 비판을 받았다. 또한, 2022년에 수립 예정이었던 제4차 NAP(2023-2028)는 2024년 4월이 되어서야 공식 보고되었는데, 성소수자의 권리와 장애인 탈시설정책이 완전히 빠졌고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기재하는 등 급격히 후퇴하였다. 시민사회 의견 수렴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정부는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표현해온 단체들을 초청하여 공청회가 파행되는 것을 방조하였다. NAP의 수립과 이행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담은 ‘인권정책기본법’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 폐기되었고 22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2025년 3월 발의되었으나 제정을 위한 정부의 의지는 찾아볼 수 없고 국회 역시 적극적이지 않다.

- 정부와 국회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올바른 수립과 이행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 정부는 국제인권기준을 토대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의 참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2. 12.3 내란상황과 사회권 침해 (제2조 제1항)

2024년 12월 3일 밤 당시 대통령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사령관은 정치활동 금지, 언론 및 노동권 제한 등을 담은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¹를 발령했다. 이후 군경이 국회에

¹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
-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투입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압수수색을 당했으며, 군은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몇 시간 뒤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계엄은 해제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4일, 해당 계엄이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한 중대한 위법 행위라 판단해 대통령을 파면했다. 위 포고령과 일련의 행위들은 사회권규약 제4조상 권리 제한의 원칙에 반한다. 2025년 4월 윤석열의 파면이 확정되기까지, 비상계엄을 지지했던 세력을 중심으로 부정선거 음모론과 허위 정보에 기반한 안티페미니즘, 외국인 혐오 등 소수자에 대한 불관용과 차별의 분위기가 급속히 확산되었다. 서울의 중식당 밀집 지역 등에서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시위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혐오와 배제의 분위기 속에서, 소수자들은 공공장소 이용, 경제활동, 사회적 참여 전반에서 위축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사회권규약이 보장하는 권리의 실질적 향유를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 당사국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비상사태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법적 또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까?
- 당사국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4월까지의 헌정 위기 기간 동안 소수자와 소외 계층(여성, 이주민, 성소수자, 장애인 포함)을 극우 폭력과 불관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3. 권리구제 접근성 (제2조 제1항)

사회권에 대한 침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다. 사법부는 입법부와 행정부에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고 있어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² 헌법재판소는 사회권에 대해서는 자유권과 달리

-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 12. 3.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² 그 일례로, 서울행정법원은 자동차가 압류되어 처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신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2021. 4. 30. 선고 2019구합85102 판결). 2011-2020년 기초생활보장 관련 행정소송은 169건으로, 국민건강보험(3,201건)과 국민연금(794건)과 비교하더라도 현저히 적다. 박우경, “사회보장사건의 법원을 통한 구제절차 현황과 개선방안” (2022), 사법정책연구원.

대체로 “국민의 권리”로 간주하여,³ 사회권을 침해당한 외국인의 헌법재판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다. 당사국은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았다.

- 당사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사회권 침해 조사권한 부여와 사회권 규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 당사국은 사회권을 침해당한 외국인의 헌법재판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4. 코로나19 이후 긴축재정 및 고소득자에 집중된 감세정책 (제2조 제1항)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확장적 재정 정책을 시행하며 GDP 대비 공공사회 지출 비율이 크게 늘어났다.⁴ 2020년 한국의 공공 사회지출 비율(15.6%)은 OECD 평균(23%)의 68% 수준에 불과하다. OECD와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들은 코로나19 이후 악화된 재정 건전성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소득·고자산 계층에 대한 과세 강화를 권고했다.⁵⁶ 그러나 2023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상속세·종합부동산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감세 정책을 추진했다. 이로 인해 2022년 395.9조 원⁷이던 국세수입이 2024년 336.5조 원으로 15% 급감⁸하고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노인 일자리, 희귀질환자 지원 등 복지 예산을 대폭 축소하는 한편, 국채 발행 확대와 긴축재정 정책을 추진했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감세 혜택은 고소득자가 서민·중산층보다 13배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⁹ 이러한 정책 기조는 소득 및 자산 격차를 더욱

³ 현재 2011. 9. 29. 선고 2007헌마1083 결정 등. 한편, 헌법재판소는 “근로의 권리”에 포함된 양질의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한 바 있다(헌재 2007. 8. 30. 선고 2004헌마670 결정).

⁴ 2019년 20%에서 2020년 23%로 3%p 증가했다. OECD, “The rise and fall of public social spending with the COVID-19 pandemic” (2023. 1. 24.),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the-rise-and-fall-of-public-social-spending-with-the-covid-19-pandemic_12563432-en.html

⁵ IMF, “Tax Policy for Inclusive Growth after the Pandemic” (2020.12.)

⁶ OECD, “Tax and Fiscal Policies after the COVID-19 Crisis” (2021.10.)

⁷ 제출본은 환율 1,375.70원/USD(2025. 6. 2. 기준)으로 환산하여 병기함.

⁸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 (2023. 8. 29.);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5년 국세수입 예산안” (2024. 8. 27.)

⁹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 (2024. 10. 31.)

심화시켰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상위 10%와 하위 10% 간 연평균 소득 격차는 2억 원을 넘어섰으며, 평균 자산 격차도 15억 원 이상으로 벌어졌다.¹⁰

- 부자감세로 세수가 줄었고, 그 여파로 복지 예산이 축소되면서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부자감세 정책을 철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OECD와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권고처럼 고소득·고자산 계층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 정부가 추진하는 상속세 개편 방안(유산취득세 도입 및 공제 확대 등)에 대해 부의 대물림 심화, 세수 부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는데, 어떤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입니까?

5. 국가인권위원회 (제2조 제1항)

국가인권위원회는 세계인권기구연합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원의 독립성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선출절차를 수립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 여당 국민의 힘이 추천한 인권위원들은 조약기구 심의에 제출하는 독립보고서의 내용을 후퇴시켰다. 위원들은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심의에 제출되는 독립보고서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권고 부분을 삭제하기도 했다.¹¹

위 위원들은 국제인권기준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 해당 인권위원들은 공식 회의에서 “조약기구가 실적 쌓기 위해 경쟁한다”¹², “왜 유엔이 하자는 대로 따라야 하나”¹³ 등 국제인권기준의 효력을 부정하거나, “외국인에 대해 인종차별철폐협약은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에게 동등한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것은 국내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이다”, “불법체류외국인 용어 폐지에 반대한다”, “외국인 가사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을 반대하고, 차등임금제를 도입해라” 등

¹⁰ 통계청 보도자료, “2024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2024. 12. 9.)

¹¹ 레디안, “인권위, UN 제출 보고서에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삭제” (2024. 3. 26.), <https://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79243>; “누더기 된 인권위 ‘인종차별철폐협약’ 권고안…‘유엔 보내기 창피하다’” (2025. 3. 9.),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6086.html

¹² 이충상 위원. 한겨레, “유엔 인권기구 향해 ‘실적 쌓으려 권고’…이충상, 인권위원 맞아?” (2024. 4. 11.),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6251.html

¹³ 김용원 위원. 한겨레, “이주 아동 체류자격 정부안조차 막은 인권위 보고서…인권위원 ‘충격적’” (2025. 3. 31.),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9706.html

국제인권기준에 명백히 반하는 발언과 주장을 하기도 했다.¹⁴ 이들은 공식회의에서 ‘위안부’ 피해자들과 성소수자를 향한 비하 및 혐오발언을 하기도 하였고, 자신들을 비판하는 언론사나 항의하는 인권침해 피해자, 활동가들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입을 반대하는 안창호 인권위원장¹⁵이 임명된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독립성을 상실하고 기능이 후퇴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의견표명을 하기도 하였으며,¹⁶¹⁷ 인권교육 과목에서 “차별금지의 이해” 과목을 폐기하고, 매년 참석해온 퀴어축제도 불참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¹⁸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의 문제제기로 2025년 10월에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의 특별심사를 예정하고 있다.¹⁹

- 자격 없고, 정치적으로 독립되지 못한 인권위원이 선출, 지명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단일한 독립선출위원회의 설치 등을 포함하여 어떠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비존중, 혐오발언, 정치적 결정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기능을 저해하는 인권위원들의 부당한 권한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예정하고 있는 제도개혁의 구체적 계획은 무엇입니까?

6. 기업과 인권 (제2조 제1항)

당사국은 관할권 내 기업이 인권실사를 이행할 법적 의무를 수립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는 2023년 야당 의원들이 제출한 실사의무화법안에 반대 의견을 제출하며,

¹⁴ 한석훈, 강정혜, 이한별 위원. 한겨레, “누더기 된 인권위 ‘인종차별철폐협약’ 권고안…“유엔 보내기 창피하다” (2025. 3. 9.),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6086.html

¹⁵ 한겨레, “Nominee to lead Korean human rights watchdog doubles down on derogatory rhetoric” (2024. 9. 4.), https://www.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1157006.html

¹⁶ 한겨레, “[Editorial] Human rights watchdog tries to justify politically biased actions” (2025. 5. 26.), https://www.hani.co.kr/arti/english_edition/english_editorials/1199447.html

¹⁷ 한겨레, “Human rights watchdog draws criticism for recommending guarantees for Yoon’s right to defense” (2025. 2. 11.), https://www.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1181901.html; 한겨레, “Head of Korea’s human rights watchdog criticizes Constitutional Court in letter to UN agency” (2025. 3. 4.), https://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1185265.html

¹⁸ 코리아헤럴드, “Human rights body not to attend LGBTQ+ festival, breaking 8-year streak” (2025. 4. 28.), <https://www.koreaherald.com/article/10475882>

¹⁹ 한겨레, “Korean human rights watchdog maintains biased claims, omissions in response to GANHRI” (2025. 6. 2.), https://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1200719.html

“선부른 법 제정”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고 국내 산업에 “전략적으로 불리”하다고 주장했다.²⁰ 보고 기간 중 공기업들을 포함한 한국 기업이 국내외에서 규약상 권리의 심각한 침해를 야기하거나 이에 기여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²¹ 그러나 당사국의 사법적 및 비사법적 절차를 통해 해당 기업이 책임을 지거나 피해자에 적절한 구제를 제공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 당사국은 기업이 인권실사를 이행할 법적 의무를 수립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실사법 제정 계획이 제3차 및 제4차 NAP에 포함되지 않았는데,²² 인권실사 법제화에 대한 정부의 “검토”²³ 결과는 무엇입니까?
- 한국 기업의 활동으로 인한 국외 인권 침해 피해자가 당사국의 구제 절차를 통해 적절한 구제를 받은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당사국은 이러한 구제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7. 기후위기와 취약계층 (제2조 제1항)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12월에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의견표명>을 정부에 전달했다.²⁴ 그러나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과정에 취약계층의 참여는 매우 적고 선별적이며 이주민 등은 참여를 못하고 있다.²⁵ 한국에서는 매년 폭염, 호우, 산불과 같은 기후재난으로 인한 사상자가 발생한다.²⁶ 2024년 7월과 8월, 쿠팡 물류센터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²⁷ 제대로

²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 (2023. 11.), 정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4147호)

²¹ 한국 기업 및 공기업의 규약상 권리 침해 사례는 기업과인권네트워크 별도보고서 참고.

²² 법무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8-2022)” (2019. 5. 29.),

<https://www.moj.go.kr/bbs/moj/121/501463/artclView.do> ;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23-2027)” (2024. 3. 27.), <https://www.moj.go.kr/bbs/moj/121/581423/artclView.do>.

²³ 정부보고서, 119번 단락.

²⁴ 주문에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할 때는 기업뿐만 아니라 농어민, 노동자, 장애인, 이주민, 소비자 등 기후위기에 더욱 취약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라는 내용과 “기후변화가 취약계층의 고용, 노동조건, 주거, 건강, 위생 등에 미치는 위협 요소를 분석하여 취약계층 보호 및 적응역량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등이 담겼다.

²⁵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회 구성”

<https://www.2050cnc.go.kr/base/contents/view?contentsNo=4&menuLevel=2&menuNo=37>

²⁶ 더타임즈, “Extreme heat in South Korea kills 11 and decimates livestock”,

<https://www.thetimes.com/world/asia/article/extreme-heat-in-south-korea-kills-11-and-decimates-livestock-js92jl0bv>

²⁷ MBC, “예견됐던 쿠팡의 죽음들…119 출동 기록 입수” (2024. 11. 3.),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52477_36515.html; 쿠팡이 당일배송을 시작한

된 냉방장치가 없는 곳에서 과도한 노동을 하면서 노동자에게 큰 위험이 되고 있다. 2024년 10월 산업안전보건법이 폭염, 한파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는 방향으로 일부 개정되었으나 실질적인 기준이 위임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개정되지 않았다.²⁸ 또한 폭염, 한파 등을 이유로 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도 보장되지 않는다. 2025년 3월,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한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로 30명이 사망했다.²⁹ 기상청은 올해 폭염이 더 빈번해지고 강해질 것으로 예상한다.³⁰ 기후위기 관련 재난피해 경험이 있는 208가구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집의 물리적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비율이 65.4%에 달하고, 주민들은 재난피해 후 불안증 등의 질환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³¹

-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기후정책을 결정할 때 농어민, 노동자, 장애인, 이주민, 소비자 등 취약계층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까?
- 정부는 기후변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폭염, 한파 등을 이유로 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까?
- 정부는 생명권, 주거권, 건강권 보장을 위해 기후재난 예방과 대책 마련에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까?

2020년 이래 2024년 9월까지 언론에 보도된 것만 20명이 사망했다. 노동건강연대, “쿠팡 ‘전국민 로켓배송’ 시대의 비극” (2024. 10. 9.), <http://laborhealth.or.kr/41926/>

²⁸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해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체감온도 33℃ 이상일 때 2시간 이내 20분 휴식’ 조항을 문제 삼아 재검토를 권고하여 시행규칙 개정이 무산되었다. 한겨레, “영세사업장 부담? 규제위가 막아선 노동자 폭염 휴식권” (2025. 5. 27.),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99681.html>.

²⁹ KBS, “30 Dead, 45 Injured in Wildfires” (2025. 3. 30.), https://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e&Seq_Code=191988

³⁰ 코리아타임즈, “Korea faces intensifying heat waves due to climate change” (2025. 2. 9.), <https://www.koreatimes.co.kr/southkorea/society/20250209/korea-faces-intensifying-heat-waves-due-to-climate-change>

³¹ 최은영 외, “기후위기와 주거권에 관한 실태조사” (2023), 국가인권위원회

8. 공적개발원조(ODA) (제2조 제1항)

2024년 기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규모는 여전히 국민총소득의 0.21%에 불과하다.³² ODA 중점협력국 27개 국 중 최빈국은 37%, 하위중소득국과 상위중소득국은 63%로, 가장 도움이 필요한 국가보다 더 부유한 국가를 더 많이 지원하고 있다.³³ 또한, 절대빈곤층,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난민, 성소수자 등 취약한 그룹을 지원하고자 하는 독립적인 전략이 부재하다.

- 2026년 새롭게 구성할 중점협력국을 선정할 기준은 무엇이며, 최빈국을 더 많이 배정할 계획은 있습니까?
- 한국 ODA가 가장 필요한 취약그룹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들을 지원할 독립적인 지원전략을 구성할 계획은 있습니까?

9.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2조 제2항)

한국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크게 후퇴했다. 제4차 NAP(2023-2027)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 대신, 국회 논의 시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소극적인 입장만을 명시하고 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4개의 차별금지법안과 10만여 명이 서명한 국민동의청원이 제출되었으나, 전국적인 도보행진과 단식농성 등 강력한 시민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2024년 5월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모두 폐기되었다. 국회와 정부 모두 입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2025년 6월 현재까지 제22대 국회에서는 법안이 다시 발의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차별금지법 제정의 핵심 추진 주체였던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후퇴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지도부 아래, 인권위는 유엔 조약기구에 제출하는 보고서에서 차별금지법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있다. 현 인권위원장은 자신의 저서와 인사청문회에서 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³⁴

³²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한국, 지난해 공적개발원조 39억 4000만 달러 지원…전년비 24.8%↑” (2025. 4. 17),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1995#policyNews>.

³³ KoFID, KCOC, “한국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에 대한 시민사회의견서” (2025), p. 11

³⁴ 한겨레, “Nominee to lead Korean human rights watchdog doubles down on derogatory rhetoric” (2024. 4. 9.), https://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1157006.html

- 당사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일정은 무엇입니까?

10.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제2조 제2항)

지난 4차 권고 이후에도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은 해소되지 않았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대에서의 동성 간 성적 접촉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³⁵ 대법원은 2022년 무죄 판결 이후³⁶ 2025년의 다른 사건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³⁷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을 위한 대법원 예규³⁸는 생식능력이 없을 것, 외부성기수술, 혼인 중이 아닐 것 등 침해적인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 동성 부부는 법적 혼인에서 배제되어 있으며,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만 인정받은 상태다.³⁹ 성소수자는 외모, 복장, 말투 등을 이유로 채용 과정은 물론 직장 내 일상에서도 차별과 괴롭힘을 겪으며, 상당수가 성희롱, 해고, 자진 퇴사를 경험했다.⁴¹ 공교육에서는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포괄적 성교육과 보호체계는 부재해, 이들은 학교 내 괴롭힘에 노출되고도 적절히 대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전환치료를 금지하는 법적 조치가 없어, 청소년들이 부모나 종교기관의 강요로 전환치료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신건강 피해가 심각하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전환치료를 경험한 성소수자는 자살 생각과 시도, 정신질환의 위험이 현저히 높았다.⁴² 보수

³⁵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³⁶ 더가디언, "South Korea's highest court overturns military convictions of two gay soldiers" (2022. 4. 22.),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2/apr/22/south-koreas-highest-court-overturns-military-convictions-of-two-gay-soldiers>

³⁷ 코리아타임즈, "Court rules consensual same-sex acts may breach discipline if on duty or in barracks" (2025. 5. 13.), <https://www.koreatimes.co.kr/southkorea/society/20250513/court-rules-consensual-same-sex-acts-may-breach-discipline-if-on-duty-or-in-barracks?latest-page=4&prnewsidx=fbda1531-1b5a-11f0-b492-02eed468a967>

³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50호, 2020. 2. 21. 일부개정, 2020. 3. 16. 시행]

³⁹ 연합뉴스, "Same sex couple loses suit against state health insurer over spousal coverage" (2022. 1. 7.), <https://en.yna.co.kr/view/AEN20220107006200315>

⁴⁰ 뉴욕타임즈, "Same-Sex Couples in South Korea Win Landmark Rights Ruling" (2024. 7. 18.), <https://www.nytimes.com/2024/07/18/world/asia/south-korea-same-sex-rights-ruling.html>

⁴¹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성소수자의 41%가 직장 내 괴롭힘을, 11.4%가 성희롱을, 14.1%가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7.4%는 자진 퇴사를 경험한다. 또한 이와 관련된 국가 차원의 통계는 2014년 이후로 수집되거나 발표되지 않고 있다.

⁴² 전환치료를 경험한 LGB 성인은 자살 생각과 시도 비율이 각각 1.44배, 2.35배 높았고, 트랜스젠더 성인의 경우 자살 시도율이 1.73배 높게 나타났다.

개신교계는 인권의 진전에 반대하며 집회, 입법 저지, 사회적 캠페인을 주도해 왔고, 이는 단순한 신념 표현을 넘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조장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나 국가는 이를 규제하거나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정치인들은 보수 개신교계와 결집해 이러한 움직임에 동조하고 있다. 대통령 후보였던 김문수는 성소수자 권리를 반대하는 기독교 집회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하였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도 종교적 신념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법의 취지를 왜곡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

- 당사국이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취한 법적·정책적 조치는 무엇이며, 그에 포함되는 균형법 제92조의6 폐지 여부, 성별정정 요건의 과도한 침해 요소(예: 생식능력 요건, 외부성기 수술 등)의 배제 여부, 동성 부부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도입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 당사국이 교육, 고용, 건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성소수자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 중인 조치는 무엇이며, 이에 포함되는 포괄적 성교육의 실시, 학교 및 직장에서의 차별 및 괴롭힘 방지 조치,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환치료를 금지하기 위해 취한 법적 조치는 무엇입니까?

11. 이주민/난민에 대한 차별 (제2조 제2항)

한국의 이민정책은 이주민을 인력난을 겪는 업종에 대한 값싼 인력공급원으로 보는 시각에 의해 규정되며, 이러한 시각은 이주민을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데 장애로 작용한다.⁴³ 많은 저임금 이주노동자들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임시취업 비자가 연장되면서 사용자에게 종속된 상태로 사실상 정주하고 있으며, 영주권 등 정주형 체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도 불안정, 저임금

Lee, H., Streed, C. G., Yi, H., Choo, S., & Kim, S. S., "Sexual orientation change efforts, depressive symptoms, and suicidality among lesbian, gay, and bisexual adults: A cross-sectional study in South Korea" (2021), *LGBT health*, 8(6), 427-432.

⁴³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업장변경제한은 외국인력도입제도가 목적하는 사용자의 안정적 노동력 확보를 위한 것이므로 합헌이라고 본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주민을 도구화하는 시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20헌마395 결정.

일 자리를 벗어나기 어렵고,⁴⁴ 사회보장에서도 배제 및 차별을 받고 있다.

기초생활보장급여는 극히 일부의 외국인에게만 적용된다.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정부의 지원을 받는데, 외국적 이주민은 수급자가 될 수 없다 보니, 보호시설들에서 입소를 거부하거나 꺼리게 되는 문제가 있다.⁴⁵

2019년 7월부터 가입자격 있는 이주민의 지역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으나 여전히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은 이주민의 비율은 2023년 말 기준 국내 체류 이주민의 40%가 넘는다.⁴⁶ 또한 이주민 지역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여러 가지 차별적인 규정들로 인해 소득·재산에 비해 훨씬 높은 보험료를 부과 당하거나 가족 합가가 불가능해 함께 사는 가족들이 따로따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는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주민이 건강보험료 체납 시 즉시 보험급여가 중단되도록 한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되었으나 일부 체류자격자에 한하여 예외가 적용되도록 하였다.⁴⁷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주민들은 의료비 부담으로 적시에 의료기관을 찾지 못하다가 질병이 악화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을 해야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 장애인등록을 할

⁴⁴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아리셀 참사는 이러한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었다. 사망자 중 18명은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여 일용직으로 고용된 이주민이었다. 이주민 중 14명은 정주형 비자에 해당하는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영주권(F5) 비자 소지자였다. ANN, “Battery plant blaze in South Korea reveals irregularities in hiring of foreign workers” (2024. 6. 27.), <https://asianews.network/battery-plant-blaze-in-south-korea-reveals-irregularities-in-hiring-of-foreign-workers>; 한겨레, “Dreams of a better life brought them to Korea — then a tragic fire tore them apart” (2024. 6. 28.), https://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1146939.html; 코리아타임즈, “Fatal battery factory fire exposes Korea's hazardous labor conditions for migrants” (2024. 6. 25.), <https://www.koreatimes.co.kr/foreignaffairs/20240625/fatal-battery-factory-fire-exposes-koreas-hazardous-labor-conditions-for-migrants>

⁴⁵ 성착취 피해를 입은 여성청소년에 대하여 성매매피해자보호법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청소년 지원시설에서 피해자가 보장시설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소시킨 사안.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 10. 18. 여성가족부에 대하여 성매매 피해를 입은 외국 국적 청소년이 지원시설에 입소할 경우 보장시설 수급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해당 지원시설에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22진정0852800).

⁴⁶ 미등록 체류자는 물론이고, 인도적 체류허가자와 그 가족을 제외한 기타(G-1) 체류자격 소지자,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이주민으로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출국기간 유예자 등이 대표적인 미가입 이주민이다.

⁴⁷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26일,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체납 시 다음 달부터 곧바로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으나(2019헌마1165), 보건복지부는 개정입법을 보험료를 체납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기업투자(D-8),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거주(F-2) 체류자격 소지자에 한하여 체납횟수가 3회 미만인 외국인에게는 보험급여 제한을 하지 않도록 신설하였다.

수 있는 외국인은 동포,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로 국한된다. 또, 장애인등록을 하더라도 연금, 수당, 의료, 재활 등 예산이 소요되는 대부분의 장애인복지서비스 혜택에서 제외된다⁴⁸. 2024년 8월 말 기준 외국 국적 등록장애인 현황은 7,805명에 불과하고 이 중 18세 미만 아동은 276명으로, 전체 장애 이주민의 수를 고려할 때 현저히 낮다.⁴⁹

- 당사국은 장기체류하는 이주노동자가 임시취업 비자의 제약에서 벗어나,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권을 보장받으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장기 거주하는 모든 이주민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 2019년 7월 이후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보험급여가 중단된 이주민은 몇 명이며, 2025년에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체납을 했더라도 보험급여 혜택을 유지하게 된 이주민은 몇 명입니까?
- 체류자격별 장애인등록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장애인등록을 한 이주민을 위한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12. 시설수용으로 인한 장애인 사회권 침해 (제2조 제2항)

현재 한국에는 약 10만여명의 장애인⁵⁰들이 시설에서 평균 18.9년 동안⁵¹ 살아가고 있으며, 평균 연령은 39.4세이다. 지난 10년간 시설 거주 장애인 수가 거의 변하지 않은 것을 고려할 때, 사실상 시설에 한 번 들어가면 다시 나오는 사례가 매우 적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차별적 제도가 유지되는 것은 그 자체로 비차별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면서

⁴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⁴⁹ 2022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CRPD/C/KOR/CO/2-3)는 장애를 가진 이주민이 기본적인 장애 관련 서비스, 재활 및 사회보장 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para. 40, 54, 58).

⁵⁰ 2023년 최신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장애인 거주시설은 총 1,529개소(27,352명), 정신장애인수용시설은 290개소(15,068명 입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정신의료기관 2,109개소(71,564명)가 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2024년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2024);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2).

⁵¹ 프레시안, “장애인이 시설에 사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통념 깨야” (2022. 9. 1.),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90113473502834>

동시에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반증한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물리적, 인식적 격리로 인해 시설에 거주하는 이들은 민주 시민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권리(교육, 노동, 법 앞의 평등, 행복 추구권, 가족구성권 등)를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차별을 시정하기보다 오히려 강화하고 있는데, 일례로 2025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예산은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시범사업의 예산액의 약 127배에 이른다.⁵² 또한, 서울시는 2022년 재정되어 장애인의 탈시설을 지원했던 “탈시설 지원조례⁵³”를 시행 2년만인 2024년에 폐지⁵⁴하여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에 퇴행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 장애를 근거로 한 물리적 고립이자 자유박탈⁵⁵인 시설 수용을 중단하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 계획, 특히 기간별 예산, 탈시설 인원, 시기에 대한 정보는 무엇입니까?
- 장애 유형이나 지원 정도에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헌법에 따른 권리를 사회에서 향유할 수 있다는 점을 권리로 선언하고 있습니까? 최근 5년간 당사국의 정책, 법률 입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무엇입니까?

⁵² 대한민국 정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⁵³ 중앙일보, “Taking disabled out of institutions sees a backlash” (2022. 6. 9.), <https://koreajoongangdaily.joins.com/2022/06/09/national/socialAffairs/Korea-deinstitutionalization-disabilities/20220609050008953.html>

⁵⁴ 한국장애포럼, “2024 Korean disability news in brief” (2024. 12. 23.), https://thekdf.org/human_rights/1897

⁵⁵ CRPD/C/5, para.6

13. 홈리스 인권 침해 (제2조 제2항)⁵⁶

거리 홈리스들은 일상적인 불심검문과 강제퇴거, 노숙 물품 철거와 같은 빈곤의 형벌화 조치⁵⁷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상업적인 뉴미디어를 통해 혐오 콘텐츠⁵⁸가 확산되고 있고, 혐오 콘텐츠 제작자들은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에도 관련 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용이한 통제를 위해 홈리스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려고 시도하는 등 일방적으로 홈리스 복지를 디지털화하려는 경향에 의해 당사자의 정보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

- 당사국은 홈리스 상태에 있는 이들을 형벌화하는 법률과 제도, 민간과 공공의 조치를 개선하기 위한 어떠한 계획이 있습니까?
- 당사국은 홈리스 복지의 디지털 기술 도입 시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14. 성평등 전담부처 (제3조)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한 윤석열 정권 하에서 지난 2년 반 동안 한국의 여성·성평등 정책은 심각하게 퇴행했다. 여성가족부는 형식적으로는 폐지되지 않았지만 그 기능과 권한이 크게 약화되어 실질적으로 무력화된 상태이다. 여성가족부 장관직은 1년 3개월 동안 공석을 유지했으며, 각종 정책에서 ‘여성’과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체계적으로 삭제되었다. 더 나아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예방 예산이 삭감되고, 일터에서 고용차별과 성희롱 사건을 지원하는 민간고용평등상담실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등 전반적인 국가 여성·성평등 정책과 제도가

⁵⁶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 주제에 대한 홈리스행동의 별도보고서 참조

⁵⁷ 2011년 극빈과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보고서를 통해 빈곤층을 처벌, 분리, 통제하고 약화시키는 정책, 법률, 행정 규제들을 ‘형벌화 조치’라 규정하였다(A/66/265, para.3). 또한, 2012년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극빈과 인권에 관한 지도 원칙’은 “잠자기, 구걸, 취식, 개인 위생 활동과 같이 공공장소에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범죄화하는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para.66(c)), “기업은 기업 활동에 의해 빈민의 권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고 감소시킬 것”(para.101)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UN OHCHR, “Guiding Principles on Extreme Poverty and Human Rights” (2012)).

한국에서는 공권력에 의한 퇴거뿐 아니라 기업 인접 공공장소에 대한 민간 기업의 법적 근거 없는 퇴거도 일어나고 있다. 한겨레, “지하보도서 쫓겨난 홈리스…“공공 공간 아닌가요?” (2024. 9. 12.),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58246.html

⁵⁸ 현재 한국에서는 거리 홈리스에게 폭언 및 폭행을 가하거나, 거리 홈리스의 신상과 거처를 무단으로 공개 및 훼손하는 영상이 유튜브 등의 방송 플랫폼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 SBS, “텐트 뺏으며 조롱까지…노숙인 혐오로 돈 버는 유튜버들” (2024.12.17.),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915989

퇴행했다.

- 당사국은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인력과 예산 확충을 포함한 국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15. 여성에 대한 폭력 (제3조)

성폭력피해자 10명 중 6명은 명시적 폭행·협박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를 입는다. 국제사회는 부부간간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강간을 협박이나 폭행이 아닌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정의하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나, 한국 정부는 2023년 양성평등기본계획에 비동의 강간죄 도입 검토를 추진과제에 포함했다가 법무부의 반대로 철회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신고는 꾸준히 늘었으나 검거율은 10% 미만에 그치고 있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의 보호와 유지’를 우선시하며 친밀한 관계의 다양한 형태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 또한 평균 4.14일마다 한 명의 여성이 일면식 없는 남성에 의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있으나, 한국은 여성혐오에 기반한 여성폭력에 대한 법적 정의나 공식 통계조차 없는 상황이다.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성적 괴롭힘’ 등 디지털성폭력이 증가하지만 법이 이를 포괄하지 못해 피해자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강요된 성매매를 입증하지 못한 피해자에 대한 처벌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 당사국이 2023년 비동의 강간죄 도입 검토를 철회한 배경은 무엇이며, 향후 개정을 위한 구체적 계획은 무엇입니까?
- 당사국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목적 조항을 ‘가정유지·보호’에서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 보장’으로 개정하고, 다양한 친밀한 관계를 포괄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16. 여성의 노동권 침해하는 페미니스트 사상 검증 문제 (제3조)

2016년부터 게임업계에서 여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페미니즘 사상검증’이 시작된 이후, 이런 검열은 문화 콘텐츠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었다.⁵⁹⁶⁰ 최근에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특정 손가락 모양(집게손가락)을 남성 혐오의 상징으로 몰아가며, 관련 이미지가 포함된 콘텐츠에 대한 공격을 가하고 있다. 특히 콘텐츠 제작자가 여성일 것이라는 추측과 함께 해당 노동자에게 사이버불링이나 고용상 불이익이 가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게임업계는 프리랜서, 외주, 특수고용 등 불안정한 고용 형태가 일반적인 구조로, 노동자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사상검증이나 젠더 이슈와 관련된 논란이 발생했을 때, 여성 노동자들은 계약해지나 프로젝트 배제 등 실질적인 고용상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많다. 2022년 한 조사에 따르면, 여성 게임노동자의 71.4%가 채용 또는 근무 과정에서 사상검증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⁶¹ 페미니즘 관련 표현이나 외부 활동 이력은 ‘논란의 소지’로 간주되어 고용 배제의 근거로 악용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여성 노동자의 생계와 정신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이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침해한다.

- 페미니즘 사상검증으로 인한 여성 노동자의 고용 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당사국은 어떤 구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17. 성별 임금격차 (제3조)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구조적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OECD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은 2023년 29.3%로 1996년 OECD 가입이래 줄곧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 OECD 평균은 11.3%이다.

⁵⁹ CNN, “South Korea’s Business World Is Being Rocked by a ‘Gender War’” (2021. 10. 2.), <https://edition.cnn.com/2021/10/02/business/south-korea-business-gender-war-intl-hnk-dst>

⁶⁰ 서울파이낸스, ““극단적 선택 시도에 유서까지 조롱”...게임업계 노동자 ‘페미니즘 사상검증’ 도마 위에” (2024. 3. 6.), <https://www.seouln.com/news/articleView.html?idxno=512504>

⁶¹ 응답자 16.5%가 ‘사상검증 이슈 심각’하다고 응답하였고(매우 심각 6.2%, 심각 10.3%), 여성 종사자 및 50인 이하 소규모 게임사에서 심각성이 더 높았다. 여성신문, “사상검증 여전한데... 문체부, 게임업계 ‘페미니즘 검증’ 실태조사 손봤다” (2023. 8. 16.),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9369>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핵심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결여되어 있는데 첫째, 직종별 성별 분리가 심각하여 여성은 돌봄, 서비스업 등 저임금 직종에, 남성은 건설, 금융 등 고임금 직종에 집중되어 있다.⁶² 이러한 구조적 불평등은 여성 2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인 현실과 2024년 영국 이코노미스트 조사에서 유리천장 지수 꼴찌를 기록하여, 1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한 것에서도 확인된다.⁶³ 둘째, “여성 직종”의 체계적 저평가가 지속되고 있으나, 현행 법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는 구조다. 남녀고용평등법이 “같은 사업장” 내 비교만 허용하여 “사업장을 넘나드는 동일가치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2006년 도입 이후 성별 임금격차 해소에 실질적 기여를 하지 못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여성 노동자의 85%가 일하는 중소기업을 배제하고 있으며,⁶⁴ 단순 보고 의무에 그쳐 실질적 개선 효과가 미미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임금공개제도는 2025년 500인 이상 민간기업까지만 적용되며, 자율참여에 의존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

2021년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신청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개별 구제 중심의 사후적 접근법으로는 구조적 성별 임금격차 해결에 한계가 있다. 2022-2024년 신청 10건 중 단 2건만 시정되었으며, 입증 부담과 보복 우려로 활용도가 극히 저조하다. 더욱이 차별시정 담당 공익위원 중 여성이 33.7%에 불과해 성별 균형적 판단에 한계가 있다.⁶⁵

- 당사국은 OECD 최고 수준의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까? 법적 강제력 확보, 적용 범위 확대, 동일가치노동 원칙 구현, 예방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실행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⁶² 한경, “여성 고용 늘어도 ‘돌봄 노동’에 쏠려…‘성별 임금 격차는 그대로’” (2025. 4. 24.),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42440277>

⁶³ 헤럴드경제, “‘유리천장에 갇혔다’…한국, ‘女 일하기 좋은 나라’ 12년 연속 ‘꼴찌’” (2024. 3. 8.), <https://biz.heraldcorp.com/article/3343190>

⁶⁴ 경향신문, “기준 느슨한 ‘AA’…기업이 여성고용에 적극적일 이유가 없다” (2023. 3. 24.), <https://www.khan.co.kr/article/202303241202011>

⁶⁵ 연합뉴스, “고용상 성차별 시행제도 시행 2년…‘시정명령 10건 중 2건꼴’” (2024. 5. 19.), <https://www.yna.co.kr/view/AKR20240519015900004?input=copy>

18. 여성의 경력단절 (제3조)

2022년 6월,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예방법)을 전면개정 했다. 하지만 법 개정에도 따라 시행된 구체적 정책은 없다. 주요 담당부처 중 하나인 여성가족부는 2023년부터 1년이 넘게 장관 임명조차 되지 않은 상태로, 실질적인 정책 추진이 중단되었다. 여성의 경력단절에 대한 효과적 대응은 예방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30대 시기에 여성들의 고용률은 64.4%로 남성보다 24.7%p 낮은 상황이다.⁶⁶ 한국 여성들의 무급 돌봄노동 부담률은 73.3%로 여전히 매우 높다.⁶⁷ 공공돌봄 인프라의 부족도 여성의 경력단절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은 여전히 낮고, 돌봄공백 시간대와 긴급돌봄 서비스가 부족하여 여성들이 사적 돌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동시에 정부는 장시간 노동 정책을 추진⁶⁸하고 있어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22년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위한 법안이 개정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들은 300인 이상의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재직중인 이들로 한정되어 있다. 중소기업사업장의 남성 노동자들은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현실적 조건에 처해 있어, 여성의 비대칭적 육아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⁶⁹

- 당사국은 개정된 법률들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해 어떠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것입니까?

19. 여성의 정치대표성 (제3조)

제22대 국회의원 중 여성 국회의원은 300명 중 61명으로 20%에 불과하며, 남성 국회의원 비율은 80%를 차지하여 남성이 과대 대표되고 있다. 이는 OECD 38개국 중 34위, 국제의회연맹(IPU) 조사 기준 세계 193개국 중 120위(2023년 1월 기준)로, 한국의 여성 정치 대표성은 국제적으로도

⁶⁶ 한겨레, “30대부터 남녀 고용률 역전…‘여성 일자리 안정돼야 저출산 해결’” (2024. 1. 2.),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22643.html>

⁶⁷ 경향신문, “‘가사노동은 아내가’…3년 전보다 늘어난 여성의 가사노동”, (2024. 4. 18.), <https://www.khan.co.kr/article/202404181456001>

⁶⁸ 프레시안, “노동정책, 젠더전략…尹 정부가 ‘여성노동자’를 착취하는 방법” (2024. 1. 24.),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12411360422897#google_vignette

⁶⁹ 한겨레, “남성 육아휴직 4만2000명…전체의 30% 처음 넘었다” (2025. 2. 24.),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83752.html>

최하위 수준이다. 2024년 제22대 총선 당시 전체 지역구 후보자 총 699명 중 여성 후보자는 99명으로, 전체의 14.16%에 불과했다. 현재 공직선거법은 지역구 후보 중 30% 이상의 여성을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권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특정 성 60% 초과 금지의 의무화가 필요하다.

-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를 위해 당사국은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 지역구 30% 여성 추천 권고를 의무사항으로 개정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20. 장애인 공공일자리 폐지 (제6조)

서울시는 2020년부터 시행했던 중증장애인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⁷⁰을 특별한 이유 없이 2024년 갑작스럽게 폐지하여 400명에 달하는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해고되었다.⁷¹ 한편, 서울시 외의 다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전히 이 공공일자리 모델을 유지하고 있다.⁷² 그러나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보급되지 못하고 있어,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동일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 장애 유형 및 지원 정도에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 특히 매우 높은 수준의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당사국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취하고 있습니까?
- 장애의 유형 및 개인별 지원 필요 수준에 따라 조정된 맞춤형 공공일자리 제공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계획 또는 법제도 수립계획이 존재합니까? 그 실행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⁷⁰ 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높은 실업률과 낮은 경제활동참가율(2023 하반기 기준 각 3.9%/50.4%, 전체 인구 2.3%/71.4%)을 보이고 있다. 장애인 고용 지원을 위한 정책들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들은 고용시장에서 배제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중증장애인이 예술 활동, 장애인권 캠페인 등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만들었다.

⁷¹ 경향신문, “서울시 ‘선택적’ 약자와의 동행…일자리 잃은 중증장애인들” (2024. 1. 27.),

<https://www.khan.co.kr/article/202401270900021>

⁷² 서울시에서 2020년 7월 전국 최초로 본 일자리를 도입한 이후, 경기도, 강원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남, 부산, 광주 등 지자체들이 해당 일자리의 사회적 가치와 장애인의 의미 있는 고용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근거해 일자리를 도입하였다.

21. 자활사업 일자리 부족 (제6조)

자활사업은 노동시장에서 밀려나거나 진입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중요한 공공일자리 정책이다. 하지만 일자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정부가 2020년 발표한 계획⁷³에 따르면 2023년까지 자활사업 참여자 수가 76,000명으로 확대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21년 예산에 따른 목표인원은 58,000명, 2022년은 66,000명에 그쳤으며, 2023년 사업비는 오히려 삭감되었다. 2024년에 이어 2025년 목표인원은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72,000명에 그쳐 2023년 목표였던 76,000명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로 인해 현장에선 대기자가 속출하지만, 정부는 대기자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

- 자활사업 일자리 수가 정부가 계획했던 목표치에도 못 미치는 등 절대적으로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사국의 정책개선 계획은 무엇인가?

22. 기후위기와 일자리 전환 (제6조)

한국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의 실현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전환 과정에서 실업의 발생 등 노동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NDC와 같은 국가전략 수립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2025년 말부터 한국의 석탄화력발전소들이 폐쇄되기 시작하며, 2만 명 이상의 발전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공공 석탄화력발전을 공공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환함으로써 발전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해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방안은 무엇입니까?
-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 일자리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⁷³ 보건복지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자활급여 기본계획(2021-2023)”,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107010100&bid=0038&act=view&list_no=362682&tag=&cg_code=&list_depth=1

23. 비정규직 고용불안과 차별 (제7조)

2024년 8월 기준 전체 임금노동자 2,214만 3천명 중 비정규직 노동자는 845만 9천명으로 전체의 38.2%를 차지하며,⁷⁴ 정부의 비정규직 분류방식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함하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923만 명으로⁷⁵ 전체 임금노동자의 41.7%에 이른다. 대기업일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 300인~500인 기업은 28.6%인데 1만인 이상 기업은 43.7%다.⁷⁶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에 더해 저임금(정규직 대비 53.6%), 낮은 사회보장 가입률(정규직 대비 국민연금 37.5%, 건강보험 52.2%, 고용보험 54.7%)⁷⁷ 등에 시달린다. 현행법상 비정규직 사용 제한 조치⁷⁸는 단기계약 반복과 위장도급 등 사용자들이 우회할 수 있는 여지가 많고 고용형태 공시제도 역시 실태 확인에 그쳐 실효성 있는 통제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노동조합 등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차별을 없애기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 상시 지속 업무 정규직 고용 원칙 확립,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등을 요구하고 있다.

- 당사국은 단기계약 반복과 위장도급 등 법을 우회하여 비정규직 남용을 구조화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어떤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까?
- 고용형태공시제 결과 비정규직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대기업에 대해 어떤 실효성 있는 규제를 도입하겠습니까?

24. 비정형 고용: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제7조)

택배기사,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퀵서비스·마트배송·가전방문 점검원 등 수많은 노동자들이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위촉 계약으로 일한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⁷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24. 8). 통계청은 한시적 근로자(기간제),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근로자 (파견, 용역, 특수형태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정의한다.

⁷⁵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2024. 8). 여기에는 간접고용, 위장자영업자, 호출노동자 등 정부 통계에서 비정규직으로 분류되지 않는 다양한 고용형태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분류했다.

⁷⁶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2024. 2). 고용노동부 2023년 3월 고용형태 공시 결과 발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⁷⁷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24. 8).

⁷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하에 종속적으로 일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다.⁷⁹ 이에 따라 최저임금, 노동시간 제한, 연차휴가, 4대보험, 해고 제한, 퇴직금 등 법적 보호에서 배제된다. 특수고용노동자의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⁸⁰ 이들 노동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은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것이지만 정부는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법적 보호를 미루고 있다.

- 당사국은 ILO 권고 제198호에 따라,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종속관계를 기준으로 노동자성을 ‘추정’하도록 하는 법 개정(근로기준법 제2조 등)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 당사국은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고용형태, 소득, 노동조건 포함)를 전국 단위에서 정례화할 계획이 있습니까?

25. 이주노동 (제7조)

한국정부는 거의 모든 취업비자에서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고 있어서 이주노동자들이 실질적인 강제노동 상태에 처해 있고 고용주에 심각하게 종속되어 있다. 또한 고용허가제 외의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민간인력업체에 의해 선발, 도입되는데, 이들은 과도한 송출비용 지불, 여권 등 신분증 압류, 인적보증, 임금착취 등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으며, 이것은 노동착취 인신매매이다. ‘위험의 이주화’로 인해 산재사망율이 내국인에 비해 세배에 달하고 임금체불 발생율도 두배 이상이다. 숙소도 열악해서 2021년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농업은 비주거용 숙소가 70퍼센트이고 전체 업종에서는 절반에 달했다. 이주노동자는 대부분 영주권신청이나 가족초청이 거의 불가능하다.

- 고용허가제를 비롯해서 취업비자 전반에서 이주노동자 착취와 강제노동을 야기하는

⁷⁹ 법원은 형식적인 계약형태보다 실질적인 종속관계(경제적 종속성)를 중요한 기준으로 노동자성을 판단하지만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⁸⁰ 통계청은 특수고용노동자를 약 50만 명으로 파악하지만(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24. 8).), 한국노동연구원은 대규모 샘플조사를 기반으로 그 수를 166만 명~221만명으로 추정했으며(“특수형태근로(특수고용) 종사자의 규모추정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 (2019. 3. 24)), 국세청 ‘인적용역사업소득자’는 862만 명에 달하며(2023년 기준) 이 중 상당수가 고용관계를 위장한 ‘가짜 자영업자’일 가능성이 높다(매일노동뉴스, “급증하는 3.3% 인적용역, 고용통계와 국세통계 괴리 커져” (2024. 7. 5.),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408>).

사업장변경 제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 계절근로, 조선업기능인력, 선원 등에 있어서 공공기관이 송출을 담당하고 브로커와 민간업체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 위험의 이주화를 중단하고 이주노동자 산업안전을 보장하는 방안, 가설건축물 숙소를 전면 금지하고 이주노동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 이주노동자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26.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제7조)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가사사용인에 대해 대부분의 조항을 적용하지 않아 광범위한 법적 사각지대를 만들어내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약 62%를 차지하며, 이들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약 15%에 달한다.⁸¹ 이에 따라 2023년 기준 약 14만 4,561개에 달하는 사업장이 근기법을 회피하기 위해 사업장을 인위적으로 분할하는 ‘위장 5인 미만 사업장(쪼개기)’으로 밝혀졌다.⁸² 초단시간 근로자는 비정규직의 약 15%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지만, 주당 노동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는 이유로 주휴수당, 퇴직금, 4대 보험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가사노동자의 경우, 2021년 가사근로자보호법 제정으로 간접고용된 일부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되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가사사용인’으로 분류되는 직접고용 가사노동자는 근로기준법과 해당 법률 모두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특히 2025년 3월 법무부와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도입하면서 이들이 ‘가사사용인’으로 간주되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도록 할 의도로 비공식 계약을 장려하여 노동권 보호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⁸³ 노동조합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5인 미만 사업장 등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조항 삭제, 사업장 쪼개기 등 탈법

⁸¹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023.11. 기준)

⁸² 매일노동뉴스, “‘가짜 5명 미만’ 의심사업장 급증” (2025. 5. 13.),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313>

⁸³ 한겨레, “정부, 최저임금 못 받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 강행” (2025. 3. 2.),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84973.html>

근절을 위한 근로감독 강화, 초단시간 노동자 차별조항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적용범위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을 표명했다.⁸⁴

- 당사국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헌법상 평등권 및 노동권 보장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하겠습니까?
-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사업장의 광범위한 존재와 '사업장 쪼개기' 관행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계획은 무엇입니까?
- 모든 가사노동자, 특히 이주 가사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법적·제도적 장치와 감독 및 권리구제 방안은 무엇입니까?

27. 최저임금 (제7조)

최저임금법은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취지와 심히 동떨어져 운영되고 있다. 첫째 최근 3년 최저임금은 비혼 단신 가구의 실태생계비의 81.7~85.4%에 불과한 수준으로 실태생계비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부양가족을 고려한 ‘가구생계비’가 핵심기준으로 반영되지 않아 ‘노동자와 그 가족이 적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정한 임금’이라는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다. 셋째 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습노동자는 3개월간 10%를 감액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차별을 고착화하며 저임금을 구조화한다. 넷째, 법적 보호망 밖에 방치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적용에서 배제되어 있으며 개인비용을 고려한 플랫폼 노동자의 평균시급은 최저임금의 47%~86%에 불과하다.⁸⁵

- 당사국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저임금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는 위원회의 이전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수습노동자 3개월간 감액 적용 등 차별을 고착하는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습니다?

⁸⁴ 국가인권위 결정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2022. 9. 15.)

⁸⁵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플랫폼 노동자 실태조사” (2024)

-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28.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제7조)

한국의 산재사망률은 지속적으로 OECD 국가중 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산재사고사망자 수는 10만명 당 8명으로 OECD 평균(2.5명)의 3배에 이른다.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작업중지권’⁸⁶이 보장되어 있으나 행사주체를 “근로자”라고만 명시하고 있어서, 노동조합이 작업중지권 행사에 관여할 수 있는지 논란과 혼란이 빚어지고 있고, “급박한 위험”이라는 제한적 요건으로 예방적 기능이 무력화되며, 하청·비정규직·이주노동자는 고용구조상 권리행사가 거의 봉쇄되어 있다. 또한 작업중지권 행사 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는 있으나 처벌 조항이 없어 오히려 사용자들은 징계·손해배상으로 보복한다. ILO 협약 155호는 작업중지권이 행사된 경우 위험이 완전히 제거되기 전까지 작업복귀 금지를 명시하지만 국내법은 “적절한 조치” 후 작업재개가 가능한 구조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로 심화되는 폭염·폭우, 서비스업 확산에 따른 감정노동 등 새로운 위험요소들이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어 현실적 보호에 한계가 있다.

- 당사국은 작업중지권을 ILO 협약 155호의 취지에 맞도록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 기후위기 및 서비스산업 확산에 따른 감정노동 등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위협하는 새로운 위험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⁸⁶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제1항.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29. 파업권 (제8조)

당사국은 2021년 ILO 협약 87호를 비준하였지만 파업권을 억압하는 법제도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었다. 파업 목적을 근로조건 개선에만 국한⁸⁷시켜 정부정책 반대나 동조파업을 불법으로 간주하며, 공무원·교사⁸⁸ 및 방위산업체⁸⁹노동자는 파업권을 원천 차단당하고 있고 하청노동자⁹⁰는 원청을 상대로 파업할 수 없다. 필수공익사업장의 광범위한 필수유지업무 규정과 대체인력 허용으로 파업 효과가 무력화되고, 2024년 7월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파업을 ‘사회재난’으로 규정⁹¹하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업무개시명령⁹²으로 파업권이 박탈되고 있다. 파업권의 협소한 보호범위로 주제, 목적, 절차, 수단의 정당성 요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 시 파업 전체가 불법이 되어 손해가압류가 남용되며, 형법 제314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평화적 파업까지 처벌받는다. 노조법 개정안들이 연이어 대통령 거부권^{93,94}으로 좌절되면서 민형사 제재가 파업 억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 위원회의 이전 권고를 고려하여 파업권의 행사를 가로막는 법과 관행을 제거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⁸⁷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 당사자”라 한다)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⁸⁸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18조, 제15조 제1항,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8조

⁸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

⁹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⁹¹ 2024. 7. 9.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를 ‘사회재난’으로 정의했다.

⁹²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제3439호 사건에서 업무개시명령은 “사람의 생명, 안전 및 보건, 건강을 보호”하는 목적을 지닌 ‘엄격한 의미의 필수서비스’에 한해 ‘극심한 위기 상황’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는 원칙을 밝히면서, 위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은 합법적인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시멘트 부문의 업무개시명령은 사실상 파업을 금지하는 것과 동일했음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화물노동자의 결사의 자유 등 노동기본권 인정을 대한민국 정부에 촉구하였다.

⁹³ 고용노동부는 이 개정안이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부여하고, 기업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법안이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노동조합이 파업 등 실효행사를 통해 노사문제를 해결하려는 관행이 고착화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제출했고,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 “제51회 임시국무회의 브리핑”(2023. 12. 1.), <https://www.korea.kr/briefing/stateCouncilView.do?newsId=148923428>

⁹⁴ 고용노동부는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 개념을 확대할 경우 ‘누구와 교섭하고, 무엇을 교섭해야 하는지 최소한의 예측가능성도 없으며, 무분별한 단체교섭 요구로 노사관계는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는 이유로 공식적인 반대입장을 냈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입장문(2024. 7. 22.자 보도자료)”,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42244&call_from=rsslink

30. 노동조합 할 권리 (제8조)

2021년 ILO협약 87호와 98호를 비준한 후 협약의 효과적 적용을 위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전면 개정해야 하지만 정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특히 ILO 전문가위원회는 87호 및 98호 협약 이행을 위해 ‘직접요청’⁹⁵을 통해 특수고용, 플랫폼, 하청노동자를 포함하여 모든 노동자가 노동조합 할 권리를 누리도록 ‘근로자’,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고, 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초기업교섭을 활성화하고, 하청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단체교섭 대상 의제를 제한하는 조항을 폐지하고, 규약시정명령, 단협시정명령, 노동조합 회계공시제도 등 행정 개입으로 노조 자율성을 침해하는 법제도를 폐지해야 하는 등의 과제를 제시하였으나, 정부는 이를 이행하기 위한 어떠한 계획도 내놓지 않고 있다.

- 2021년 비준한 87호 및 98호에 맞게 모든 노동자가 단결권, 단체교섭권, 파업권을 누릴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31. 기초생활보장 (제9조)

한국의 공공부조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낮은 재산기준, 근로능력평가 등 까다로운 선정기준으로 인해 14.9% 높은 빈곤율 대비 5.3% 낮은 수급자 수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차 심의에서도 권고된 바 있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이행되지 않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 수는 각 인구의 3.3%, 2.8%에 불과하고, 사각지대가 66만 명⁹⁶에 달한다. 또 생계급여 최대 보장수준이자

⁹⁵ ILO Committee of Expert on Application of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 (CEACR), “Direct request adopted 2023 and 2024 on Convention No. 87 and No. 98”, https://normlex.ilo.org/dyn/nrmlx_en/f?p=1000:13100:0::NO:13100:P13100_COMMENT_ID,P13100_COUNTRY_ID:4420382,103123:NO; [https://normlex.ilo.org/dyn/nrmlx_en/f?p=1000:13100:0::NO:13100:P13100_COMMENT_ID,P13100_COUNTRY_ID:4417868,103123:NO](https://normlex.ilo.org/dyn/nrmlx_en/f?p=1000:13100:0::NO:13100:P13100_COMMENT_ID,P13100_COUNTRY_ID:4417868,103123:NO;)

⁹⁶ 보건복지부, “제3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2024~2026)” (2023)

급여별 선정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이 실제 중위값과 큰 격차⁹⁷를 유지하며 수급비가 낮게 유지되고 있다. 또한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를 현행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을 추진중에 있어 가난한 이들이 치료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 부양의무자기준 등으로 인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 기준중위소득 현실화 등 급여 보장수준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 당사국은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중단하고 수급자들이 겪는 미충족의료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 계획이 있습니까?

32. 국민연금 (제9조)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0.4%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OECD 평균 14.2%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상황이다.⁹⁸ 노인빈곤율이 높은 주요 원인으로는 공적연금의 미성숙에 있는데, 국민연금 평균 급여액은 월 65만 원으로 노후최소생활비 136만 원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지난 4월, 18년 만의 연금개혁으로 소득대체율 43%(한국 기준)로 올렸지만 이는 OECD 기준으로는 33.4%로 OECD 평균 42.3%의 79%, EU 평균 49.5%의 67%에 불과하다. 또한 국민연금은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과 실직 또는 경력단절 상태의 청년과 여성 등 광범위한 사각지대로 가입자들의 실가입기간이 짧은 편이다.⁹⁹ 이번 연금개혁에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이 일부 추진되었으나 여전히 미흡하다.

- 정부는 국민연금이 공적연금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정소득대체율을 인상함과 동시에 사각지대 해소 등 실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한 조치를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⁹⁷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에서 2024년 분석한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의한 2024년의 추정치 1인 가구 기준 소득의 중위값은 271만원이다. 하지만 2024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은 222.8만원으로 48.3만원의 격차가 있다. 이로 인한 1인가구 생계급여 삭감금액은 15.5만원이라고 볼 수 있다.

⁹⁸ OECD,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2023)

⁹⁹ 2024년 6월 기준, 18~59세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3,010만 명 중 약 1,034만 명(34.4%)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 중 674만 명은 아예 가입하지 않았고, 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납부 예외자가 된 이들이 287만 명, 장기 체납자는 73만 명에 달한다. 한겨레, “18~59살 3명 중 1명 국민연금 사각지대…“노동시장 맞게 개선해야” (2025. 2. 12.),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182152.html>

3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제9조)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23년 기준 64.9%로 OECD 평균 76.3%에 비해 매우 낮다.¹⁰⁰ 낮은 보장성으로 인해 가계지출 중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 비율 역시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가처분소득의 40%를 의료비로 지출해야 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출 가구 비율도 매우 높다.¹⁰¹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가량을 부담해야 한다는 법정 기준을 위반하고 평균 14% 수준만 지원하고 있어 이로 인한 누적 미납금이 지난 10년간 35조 원을 넘었다.¹⁰² 더욱이 감사원이 2025년 5월 14일 발표한 “건강·실손·자동차보험 등 보험서비스 이용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실손보험이 연간 최소 12.9조 원의 추가 의료비를 유발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최소 약 3.8조 원의 부담을 전가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손보험이 국민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드러났다.

- 건강보험 보장성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하라는 지난 4차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은 무엇입니까?
-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의무를 법제화하고, 누적 미납금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 건강보험을 위협하는 실손보험의 의료비 유발 효과를 규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34. 돌봄 (제9조)

한국사회는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증가, 가족 구조와 노동 형태의 변화 속에서 돌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돌봄의 책임은 여전히 개인과 가족, 특히 여성에게 전가되고 있다.

¹⁰⁰ 뉴시스, “진보 보장률 OECD 최하위…무임승차에 연 6.5조 손실” (2025. 4. 14.),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412_0003136846

¹⁰¹ 연합뉴스,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 비율 추이” (2025. 6. 22.),

<https://www.yna.co.kr/view/GYH20250622000500044?input=1363m>

¹⁰²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민생경제 성장도모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정책보고서,

https://nhui.or.kr/bbs/board.php?bo_table=board70&wr_id=154

또한 주요 사회서비스의 제공이 민간에 맡겨져 있어 운영의 불투명성과 서비스 질 저하, 종사자 처우 악화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돌봄의 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서울시의회에서 폐원되었으며, 돌봄서비스 부문의 인력난을 해결하고 돌봄 비용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더 낮은 임금과 더 열악한 노동조건을 만들어 이주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취하고 있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공공돌봄이 필요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처우가 서비스 질의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35. 상병수당 (제9조)

사회권규약 일반논평 19호에서는 질병으로 인한 소득상실 기간 보전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나,¹⁰³ 당사국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 당사국 정부는 2022년 7월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2025년에는 전국적으로 상병수당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공표하였으나,¹⁰⁴ 시범사업은 ILO 기준에 미달한 수준이고,¹⁰⁵ 여전히 상병수당 제도는 도입되지 않고 있다. 당사국의 노동자들은 법정 유급병가도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병수당의 공백으로 아플 때 쉬지 못하고,¹⁰⁶ 일을 쉴 경우 소득이 보전되지 않아 빈곤에 빠지고 있다.¹⁰⁷

¹⁰³ “14. 건강이 나빠 일을 못 하는 사람들에게 소득상실의 기간을 보전해주기 위해 현금으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¹⁰⁴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상병수당 시범사업 본격 시작” (2022. 7. 11.),

https://www.mohw.go.kr/board.es?mid=a20401000000&bid=0032&act=view&list_no=372137&tag=&nPage=14

¹⁰⁵ 시범사업은 공식 노동 영역과 비공식 노동의 일부만을 포함하고, 사회보험을 납부하는 외국인과 대부분의 비공식 노동자를 제외했다. 보장금액도 최저임금의 60% 정도로 매우 낮아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이고 지급 기간은 최대 150일에 그쳤다.

¹⁰⁶ 자기보고 방식으로 조사한, 한국 노동 인구가 연중 아파서 일을 쉴 날은 2021년 1.7일, 2022년 2.9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OECD, “Absence from work due to illness”, <https://data-viewer.oecd.org/?chartId=56bcc4ab-f018-459a-9211-6945170537bb>

¹⁰⁷ Kim, C., “Effect of Health Shocks on Poverty Status in South Korea: Exploring the Mechanism of Medical Impoverishment” (2022. 10. 11.),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 ILO 1969년 상병수당협약 기준¹⁰⁸에 부합하는 상병수당 제도는 언제 도입할 것입니까?
- 성별, 공식/비공식 노동, 국내 국적 여부 등으로 분류한 노동자 집단별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가처분소득의 감소분에 대한 정보는 무엇입니까?

36. 실업에 대한 사회적 보호 최저선 (제9조)

당사국은 실업 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써 고용보험제도와 국민취업지원제도¹⁰⁹를 두고 있지만 모든 실업자의 기초소득을 보장하지는 못하고 있다.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실업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수당의 지급수준과 기간이 50만원, 최대 6개월로 낮고, 연령 제한, 일정기간 동안의 취업경험을 요구하는 등 수급요건이 엄격하다.¹¹⁰ 한편 정부는 2021년부터 예산을 44% 삭감했지만,¹¹¹ 예비비를 사용해야 할 만큼 참여자는 늘어나고 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급요건, 지급되는 수당의 액수와 기간에 관한 정보는 무엇입니까?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예산을 삭감한 근거가 무엇이고, 향후 예산을 증액하여 편성할 계획이 있습니까?

37. 노인 (제10조)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OECD 최고 수준으로 높고, 조기 퇴직으로 인한 소득과 역할의 상실, 사회적 관계의 축소와 고독과 소외, 자살률 증가, 연령주의(ageism) 팽배로 인한 존엄성의 손상, 학대, 차별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노인인권 보장은 사회복지 제도와 서비스로 예방과 해결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어서 사회복지를 넘어선 넓은 인권보장 문제를 상대적으로 등한시해오고 있다. 기존의 노인복지법에서도 노인 인권보장을 노인 학대 정도로 한정함으로써

¹⁰⁸ 경제활동인구의 75% 이상을 대상으로 할 것, 지급기간 제한이 52주 이상일 것, 노동능력 상실 전 소득의 60% 이상을 보장할 것 등

¹⁰⁹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Employment Policy",
<https://www.moel.go.kr/english/policy/employment.do>

¹¹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https://elaw.klri.re.kr/kor_service/lawView.do?hseq=63505&lang=ENG

¹¹¹ 한국일보, "청년·저소득층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예산, 尹정부 3년간 44% 삭감" (2024. 9. 27.),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92709510000272?did=NT>

노인 인권 침해 전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추구 및 자유를 노인에게 명확히 구현해 지속가능한 고령화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국내 노인인권 관련 법규를 통합·일원화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체적·정신적 노화로 인해 노인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보장하고, 사회복지가 국가의 ‘시혜’가 아닌 인권 기반의 당연한 ‘권리’로 확립될 수 있도록 노인인권 관련 법제화가 필요하다.

- 정부는 모두의 존엄한 노년을 위해 노인인권기본법을 제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38. 아동학대 예방과 구제(제10조)

2023년 학대피해아동 발견율은 2020년 보다 하락하였으며, 정부의 목표치에도 미치지 못한다.¹¹²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은 확대되었으나 교직원에 의한 신고 건수는 오히려 감소하였다.¹¹³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 학대 비율은 최근 3년 간 96~95%로 높다¹¹⁴. 한편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¹¹²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연도별 피해아동 발견율은 2020년 4.0%, 2021년 5.02%, 2022년 3.85%, 2023년 3.64%이다. 정부는 2023년 3.8%로 아동학대 발견율 목표치를 설정하였으나 달성하지 못하였고, 이는 OECD 국가의 발견율에 미치지 못한다.

[한국과 미국의 연도별 피해아동 발견율]

(단위: %)

	'20년	'21년	'22년	'23년
한국 (정부 목표치)	4.0 (신규)	5.0 (신규)	3.9 (4.3)	3.64 (3.8)
미국	8.3	8.1	7.7	-

보건복지부, “2023 아동학대 주요통계 재구성” (2024);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Child Maltreatment 2022” (2023)

¹¹³ 정부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약사 등 의료인을 추가하여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를 기대했으나, 2023년도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는 27.4%에 그쳤다. 또한 아동을 빈번히 접촉하는 초·중고 직원의 아동학대 신고는 2023년 11.6%로 2022년 14.3%에 비해 2.7% 낮아졌다. 또한, 의료인, 의료기사에 의한 신고율은 1%에 지나지 않는다.

[아동학대 신고자 유형]

(단위: 건, %)

	'20년		'21년		'22년		'23년	
신고의무자	10,973	28.2%	23,372	44.9%	16,149	36.3%	12,533	27.4%
비신고의무자	27,956	71.8%	28,711	55.1%	28,382	63.7%	33,218	72.6%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주요통계” (2021, 2022, 2023, 2024) 재구성

¹¹⁴ [6세 미만 아동학대 피해자 비율 및 보호자 학대 비율]

(단위: 건, %)

구분	6세 미만 아동학대 피해아동 비율	보호자 학대 비율
2021	20	97.4
2022	17.3	96.7
2023	18	96.1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p. 12.

시효¹¹⁵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불처벌되거나 법적대응을 하지 못하게 되는 등¹¹⁶ 피해자가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 영유아 가정에서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보편적 가정방문서비스와 같은 정책 마련 계획에 대한 정보는 무엇입니까?
-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형사/민사상의 시효에 관한 정보와 아동학대범죄 적용되는 시효제도의 폐지 및 개선 계획은 무엇입니까?

39. 보편적 출생등록 (제10조)

정부는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법무부가 추진하여 국회의원이 발의하였던 해당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이후 정부의 노력 및 대책에 대해 알려진 바 없다. 정부는 법 시행 전 출생 미등록 아동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2015년에서 2023년 사이 보호자가 외국인으로 입력된 신생아 5,183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2.8%의 상태가 파악되지 않는 등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 당사국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을 위한 법제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습니까?

40. 미등록 이주아동 (제10조)

미등록 이주아동은 예방접종을 제외한 의료보장과 최저생활보장에서 배제되고 있다. 정부의 구제대책으로 초·중등학교 재학 중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제화 권고에도 불구하고, 2028년 3월까지 한시적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고,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지 못하여 신청이 어려운 아동들이 다수 존재한다. 신청 시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범칙금이 지나치게 높고, 성인이 된 이후 국내 정착을 위한 체류자격 변경요건도 까다롭다.

¹¹⁵ 아동이 성인이 된 이후에 기산되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는 달리, 아동학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¹¹⁶ 많은 경우 가해자가 가까운 가족이기 때문이다.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 간의 관계는 부모에 의한 발생 건수가 2023년 기준 21,336건(아동학대 발생 건수의 약 82.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중에서도, 아동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약 20,659건(80.3%)에 달하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주요통계” (2023).

- 당사국은 아동 최선의 이익의 관점에서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안정적 체류자격 부여, 의료 및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습니까?

41. 발달장애 가족참사(제10조)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사회지원의 부족으로 부모 5명 중 1명은 직장을 그만두었고, 59.8%는 자살을 고민한다고 나타났다.¹¹⁷ 2022년 국회는 발달장애인 가정의 아동 살해 후 자살 사건은 국가 차원의 돌봄, 활동 지원, 양육 부담 등 지원체계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재난임을 명시한 ‘발달장애인 가족참사 대책마련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후로도 매달 유사한 살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발달장애아동 56명이 보호자로부터 살해당하였는데,¹¹⁸ 2022년 기준 장애아동의 피살률은 전체 아동의 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¹⁹ 2000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1~3명 이상이 자녀를 살해한 후 자살하였다.¹²⁰

- 발달장애인에 대한 살해 후 자살이 지속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만약 아직 통계가 마련되지 않았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당사국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 장애아동 가정에 대한 행정 전수조사의 주기적 실시 및 위기 가구에 대한 실질적 사례관리와 긴급지원 체계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¹¹⁷ 경향신문,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make disability caregivers isolated in Korea” (2025. 4. 21.), <https://www.khan.co.kr/article/202504211745307>

¹¹⁸ 경향신문, “‘자살결심’ 부모 손에 떠난 아동 5년간 56명…영암 사건 이후 전남도 ‘전수조사’” (2023. 9. 24.), <https://www.khan.co.kr/article/202309241541001>

¹¹⁹ 연합뉴스, “반복되는 장애 가족 비극…”장애아동 피살률, 전체 아동의 6배” (2025. 4. 18.), <https://www.yna.co.kr/view/AKR20250417168000530>

¹²⁰ Kim, Mi Ok, Kim, Hyun Jung, & Kim, Hyun Ah, “An Exploratory Study of Homicide-Suicide among Parent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2025),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45(1)

42. 홈리스 주거권 (제11조)¹²¹

노숙인복지법이 정한 ‘노숙인 등’은 범위가 협소하여 수많은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¹²² 홈리스 주거지원은 여전히 시설 수용 중심이며,¹²³ 홈리스를 위한 임대주택 정책(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독립적 법률없이 시행되어 물량 부족 등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 당사국은 다양한 상태의 홈리스 인구를 포괄할 수 있도록 ‘홈리스’, ‘주거취약계층’ 등으로 법제명과 정책 대상 정의를 변경할 의향이 있습니까?
- 당사국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법률(가칭,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법률)을 제정할 의향이 있습니까?

43. 전세사기/공공임대주택 (제11조)

2023년 기준 ‘장기공공임대주택법’에 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전체 주택수¹²⁴ 대비 5.2%(1.17백만 호)이며, 주거취약계층을 포괄하는 매입임대주택 재고를 합해도 6.2%(1.39백만 호)에 그친다. 임차가구 비율은 2020년 센서스 기준으로 39%인데 이들 대부분이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약 절반은 점유형태가 매우 큰 보증금을 납부하는 전세로 거주한다. 하지만 임차인 보호제도가 미약하고 정부의 임대주택시장 규제가 미비한 탓에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잇따랐고, 이로 인해 9명 이상의 피해자가 사망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6월부터 특별법을 시행하여 주택매입 후 임대를 통한 지원을 약속했으나,

¹²¹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 주제에 대한 홈리스행동의 별도보고서 참고.

¹²² 노숙인등복지법은 ‘노숙인 등’이란 정의를 통해 무주거자, 노숙인시설 생활자, 주거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 생활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태조사 및 정책 대상은 무주거자, 노숙인 생활시설 거주자, 쪽방 주민만으로 한정해 고시원, 숙박시설 등 다양한 비적정 거처 거주자를 배제하여 홈리스의 규모를 축소 파악하고 있다. 일례로 보건복지부는 2021년 전국 ‘노숙인 등’의 수를 14,404명으로 파악한 반면(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국토교통부는 2022년 ‘주택 이외의 거처’ 거주 가구를 443,126가구로 파악하여(2022년 주택 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용어 자체의 뜻 역시, ‘노숙인’은 ‘이슬을 맞고 자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다양한 비적정 거처 거주자들을 대표하는 용어로 적절하지 않다.

¹²³ 사회권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대한 4차 심의를 통해 “(a) 홈리스 문제의 근본 원인 해결 및 홈리스를 위한 장기적 해결책 마련 (b) 사회주택 등 적절하고 합리적인 가격대의 주거에 대한 이용성 증대” 등을 권고하였다(E/C.12/KOR/CO/4, para. 53). 그러나 노숙인생활시설 입소자 중 31.1%가 20년 이상 거주자로(보건복지부,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생활시설은 홈리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으로 공급되는 ‘매입임대주택’은 지원 대상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매해 2,000호 물량 만을 책정해(국토교통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II-1”) 수요에 크게 미달하는 현실이다.

¹²⁴ 국토교통부, “주택보급률”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은 줄곧 감소하여 2025년 예산은 2022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 3만 가구 이상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향후 정부는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어떻게 안전하고 부담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입니까?
- 전세사기 피해자, 반지하 침수 피해자, 부적절한 주거 거주자 등의 높은 수요를 고려할 때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23~2032)에서 수립한 목표치(연간 7만 호)보다 더 많은 공급이 필요한데,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예산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44. 강제퇴거 (제11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순환식 정비방식과 임시거주시설·임시상가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민간 주도로 추진되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는 임시거주시설과 임시상가를 설치해 강제 퇴거를 예방하고 재정착을 지원하는 순환정비 사례가 없다. 또한, 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개발과 달리 공공임대주택 의무공급이나 세입자에 대한 법적 이주대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 강제퇴거 예방과 재정착을 위한 중요한 수단인 개발사업에서 임시거주시설 및 임시상가의 설치 등 선이주 계획을 수립하는 순환식 정비방식을 실질화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 재건축 등 개발사업의 종류에 따라 세입자의 법적 보호가 부재한 것은 퇴거를 당하는 사람들의 점유 안정성을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되는데 세입자의 법적 보호가 부재한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45.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을 통한 노점상 강제철거 (제11조)

특별사법경찰제도는 특정 범죄나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나 치안 유지를 위해 행정 공무원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는 제도임에도 한국의 일부 지자체에서는 ‘노점단속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는 가난한 이들의 최후의 생계 수단 중 하나이자 오래된 상행위인 노점을 범죄로 취급한다는 점에서부터 문제다. 또 노점단속 특별사법경찰이 최초로 도입된 동대문구에서는 폭언과 물리적 폭력이 동반된 단속과 관련 법 규정을 지키지 않고 강행되는 강제철거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가 속출¹²⁵하고 있다. 공공의 대안없이 노점을 없애야 하는 존재로 취급하는 노점단속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폐지하고,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노점을 없애는 목적으로 도입되어 단속과 철거 과정에서 폭언과 물리적 폭력 등 인권침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노점단속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46. 공공의료 강화 (제12조)

한국의 공공병원 병상수는 OECD 평균의 ⅓ 수준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 적은 수의 공공병원들이 코로나19 환자 대부분을 치료했다.¹²⁶ 한국 의료기관의 절대다수인 민간병원들이 위기 대응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턱없이 부족한 공공병원을 단 1개소도 늘리지 않은 것을 넘어 예산도 대폭 삭감했다.¹²⁷ 공공병원은 규모가 작아 지역사회의 필요에 비해 충분한 인력과 기능을 갖추기 어렵고, 공공병원의 공익적 기능에 따른 불가피한 적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 체계가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공공병원 기능 강화는커녕 민간위탁 계획을 발표하며 공공병원이 민간병원과 시장에서 경쟁하도록 내몰아 왔다.

- 공공병원 확충의 걸림돌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하고, OECD 평균 수준의 공공의료 인프라를 구축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¹²⁵ 진보당 국회의원 윤종오 등이 2024. 9. 3. 개최한 “노점단속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문제점 폭로 및 노점상 증언대회” 행사 내용 중.

¹²⁶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진료의 지역완결성을 위한 공공병원 확충 과제” (2022. 3. 21.), <https://www.nars.go.kr/report/view.do?brdSeq=38348&cmsCode=CM0018>

¹²⁷ MBC, “공공병원, 코로나 환자 돌보며 적자 늘었는데…정부 예산은 98.7% 삭감” (2023. 11. 23.),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46383_36126.html ; 시사인, “코로나 때는 ‘덕분에’라더니...공공병원 예산 95억 줄었다” (2023. 9. 12.),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163>

- 공공병원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위탁 정책을 재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47. 의료민영화 (제12조)

한국 의료체계는 과잉진료와 비급여를 활용한 수익성 추구에 매몰되어, 실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본질적인 의료는 경시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지역의료가 무너지고 있으며, 수도권에서도 응급실 뱅뱅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23년 10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명목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작년부터 병원급에서 청구 관련 전산 정보가 민간보험회사의 기구인 ‘보험개발원’으로 이관되고 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의료보험 이용 편의를 제고한다는 미명 아래 민영의료보험 사용을 촉진하여,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의료비 지출을 늘려 정부와 가계 모두에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사보험 연계라는 이름 아래 개인의 동의 없이 건강보험공단에 축적된 의료·건강 정보를 민간보험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시도가 반복되고 있으며, 기업의 편의를 위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의약품·의료기기 허가 과정에 대한 규제 완화도 추진되고 있다. 영리병원 도입 시도 역시 계속되고 있다.

- 국민건강정보의 민간보험사 활용과 실손보험 확대 정책을 중단하고, 국민건강보험 중심의 의료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 있습니까?
-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의약품·의료기기 규제완화와 영리병원 도입 시도를 중단할 의향이 있습니까?

48. 정신건강과 자살예방 (제12조)

위원회의 반복되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자살률은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10만명 당 27.3명에 달하며¹²⁸, 2024년 자살건수는 하루 39.5명 꼴로 13년만에 최대를

¹²⁸ 한국 통계청, “자살률” (2023년 기준),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8040>

기록했다.¹²⁹ 한국 정부의 자살예방 정책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¹³⁰

자살 동기로 정신과적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이 높게 나타났음에도¹³¹ 정부의 자살예방 사업은 근본적 원인을 겨냥하기보다 캠페인, 사후지원 등의 표면적 정책에 머물러 있으며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활성화하는 데에는 많은 부족함을 보이고 있다.

- 정신적, 심리적 지원 또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자살의 근본적 원인 해결을 위한 정책과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49. 재난참사를 비롯한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의 정신건강 (제12조)

대형 재난참사, 과거의 국가폭력 등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은 지속적으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지만 의료지원금과 심리상담은 일부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에게만 제공되고, 특별법이나 조례가 만들어진 경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무상으로 이뤄진다.¹³² 심리지원을 담당하는 국가트라우마센터,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는 지원대상의 한정, 예산삭감¹³³과 인력 부족, 권역의 한정 등의 한계가 있다.

- 대형 재난참사, 과거의 국가폭력 등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에게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의료지원금과 심리상담이 영구적으로 제공됩니까?
- 국가트라우마센터,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와 의료지원금과 심리상담이 필요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정부의 중장기적 계획은 무엇입니까?

¹²⁹ 코리아헤럴드, “Suicide deaths in S. Korea hit 13-yr high in 2024; daily average at 39.5: data” (2025. 2. 26.), <https://www.koreaherald.com/article/10429652>

¹³⁰ 중부일보, “고의적 자해 방지 계획에도 최고치 기록… 정부 대책 실효성 의문” (2025. 3. 16.), <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687131>

¹³¹ 경찰청, “변사자 통계” (2023년 기준). 통계 자료: <https://kfsp-datazoom.or.kr/korea02.do>

¹³² A/HRC/54/24/Add. 1, para. 48.

¹³³ 한겨레, “내란·참사 잇단 충격에도…국가트라우마센터 예산은 삭감” (2025. 1. 13.),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177666.html>

50. 성과 재생산권리 (제12조)

2019년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임신중지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고, 2020년까지 대체 입법이 없을 경우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명시하였다. 이후 새로운 법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2021년부터 임신중지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비범죄화 이후에도 성 및 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대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적 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 대표적으로 세계보건기구(WHO)의 필수약품인 미페프리스톤은 여전히 승인되지 않았고, 미소프로스톨의 사용 또한 제한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여성이 확인되지 않은 온라인 판매상을 통해 약을 구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서도 초기 임신중지에 약을 사용하지 못 하거나, WHO가 권고하는 약이 아닌 안전성과 효과성이 떨어지는 약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은 과거의 제한적 허용 요건을 여전히 적용하여, 현재 대부분의 임신중지에 급여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는 특히 사회경제적·지리적 취약 계층 여성들의 의료 접근성과 건강권, 노동권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아울러 정부 가이드라인 부재로 다수의 의료기관이 여전히 임신중지 시 상대 남성의 동의나 청소년의 보호자 동의를 요구하고 있어,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다.

- 당사국에서 임신중지가 더 이상 처벌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WHO 필수약품인 미페프리스톤을 승인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산유도제 승인 지연으로 인한 여성 건강권 침해 현황 파악과 개선 계획은 무엇입니까?
- 임신중지에 대한 건강보험 미적용이 사회경제적 취약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부는 어떤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보장 확대 계획은 무엇입니까?
- 의료기관에서 임신중지 시 상대 동의 요구 관행이 청소년 및 취약계층 여성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정부는 어떻게 평가하며, 이를 시정할 구체적 계획은 무엇입니까?

51.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건강권 보장 (제12조)

사회적 편견과 차별 등으로 트랜스젠더, HIV 감염인,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 노숙인,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들의 의료접근성이 크게 제약되고 있다. 트랜스젠더의 경우 법적 성별 정정 요건에 신체 침습적인 외과적 수술이 포함되어 있고, 호르몬 요법과 외과적 수술 등 성별 정정 관련

의료적 조치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HIV/AIDS에 대한 비과학적 낙인으로 인해 감염인의 51.8%가 병원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으며, 장기 요양이 필요한 감염인이 이용할 수 있는 요양병원도 없다.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아 2021년 기준 장애인의 치료가능사망률과 예방가능사망률은 비장애인보다 각각 6.2배, 2.4배 높다. 노숙인 1종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노숙인 진료시설’만을 이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요건 완화와 성별정정 관련 의료비의 건강보험 적용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해소할 계획이 있습니까?
- HIV 감염인을 위한 요양병원, 장애인 접근 가능한 의료시설 등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의료 인프라를 확충할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 의료기관 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관행을 근절하고, 노숙인 진료시설 이용 강제 등의 제한을 철폐할 계획이 있습니까?

52.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제12조)

유엔 특별보고관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서 결정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건강권을 비롯한 규약상 다양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조치이다.¹³⁴ 한국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시민들의 반대¹³⁵에도 불구하고 과학적·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요구되는 최소한의 외교적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시민들의 문제제기를 괴담이라 평가했다.¹³⁶ 중대한 의사결정에 있어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도 마련하지 않았고, 독자적 영향평가도 진행하지 않았다.

- 오염수 방류에 대해 한국정부는 과학적·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건강권 등 규약상 권리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는 평가한 사실이 있습니까?

¹³⁴ AL JPN 2/2025,

<https://spcommreports.ohchr.org/TMResultsBase/DownloadPublicCommunicationFile?gId=29774>

¹³⁵ 연합뉴스, “Thousands rally in Seoul to protest Fukushima water release” (2023. 8. 26.),

<https://en.yna.co.kr/view/AEN20230826002400315>

¹³⁶ 한겨레, “1 year into Fukushima dumping, Korea’s presidential office runs interference for Japan” (2024. 8. 28.), https://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nglish_editorials/1155806.html

- 오염수 방류에 대해 한국정부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서 어떠한 의견수렴 절차와 보호조치를 취했습니까?

53. 학생인권 (제13조)

정부는 청소년의 성 정체성에 혼란을 일으킨다는 등의 이유로 2022. 12. 교과서와 교육정책에서 “성소수자,” “성평등” 용어를 삭제하고 임신중지나 성적 자기결정권 등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대해 교육하지 않는 교육과정개정안을 고시하였다. 이는 2027년까지 전면 실시될 예정이다.¹³⁷ 또한 2023. 12.과 2024. 4. 충청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는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교육청 학생인권 구제 체계의 근거가 되었던 각 지역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¹³⁸ 교육환경에서 학생에 대한 통제도 강화되는 경향이다. 포용적인 교육에 역행하는 상황이며, 차별과 폭력에 대한 학생의 취약성은 더 커지고 있다.

- 모든 아동청소년에 대한 안전하고 포용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종합계획과 그 실효성에 대한 평가 자료는 무엇입니까?
- 당사국은 모든 아동청소년의 성 및 재생산 건강에 관한 포괄적 성교육과 차별 기타 인권 침해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국가 차원의 학생인권기본법 제정 등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54. 양질의 직업교육 (제13조)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 현장실습, 일학습병행법에 따른 산학일체형 도제교육에서 18세 미만의 학생들이 건설, 기계, 화학, 전기 등 위험한 업무에

¹³⁷ OL KOR 3/2024,

<https://spcommreports.ohchr.org/TMResultsBase/DownloadPublicCommunicationFile?gId=29457>

¹³⁸ The execution of these bills has been suspended due to appeals. In case of Chungcheongnam-do, the Chungnam Provincial Superintendent of Education filed a lawsuit and requested the suspension of execution to the Supreme Court on 13 May 2024. The Supreme Court suspended the execution on 30 May 2024. In case of Seoul Metropolitan City, the superintendent of the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filed a lawsuit and requested the suspension of execution to the Supreme Court on 11 July 2024. The Supreme Court suspended execution on 23 July 2024. A final decision on the merits of either case has not been made yet. (OL KOR 3/2024)

노출되고 있다. 근로기준법 65조는 18세 미만의 학생들의 투입되어서는 안 되는 위험업무를 정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관리 감독이 부족하여 현장실습생들이 충분한 안전교육 없이 위험작업에 투입되어 2019년 6건, 2020년 5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으며, 2021년에는 18세 미만 금지업무인 잠수작업 중 학생이 사망했다. 전공 교육과 무관한 무관한 청소·허드렛일 등 단순 노무에 학습근로자를 투입하여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하고 있어 기술 숙련을 목적으로 하는 도제교육의 본래 취지와 완전히 배치되고 있다.¹³⁹

- 근로기준법 65조가 정한 위험업무에 현장실습생이 투입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사망사고를 포함한 현장실습 과정에서의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 현장실습생 및 학습근로자가 양질의 직업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55. AI교과서의 도입 (제13조)

정부는 시민사회단체, 교원, 학부모의 반대¹⁴⁰에도 불구하고 2025년부터 에듀테크 기업에 의해 개발된 AI교과서를 학교 현장에 도입했다.¹⁴¹ 정부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 AI 편향에 대한 보호 대책,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호 대책,¹⁴² 구제절차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근거도 없이 AI교과서를 ‘교과용 도서’로 지정하여 학교 현장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국회에서는 AI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통과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¹⁴³

¹³⁹ ILO, “Observation (CEACR) - adopted 2023, published 112nd ILC session (2024) Minimum Age Convention, 1973 (No. 138) - Republic of Korea (Ratification: 1999)”, https://normlex.ilo.org/dyn/nrmlx_en/f?p=1000:13100:0::NO:13100:P13100_COMMENT_ID,P13100_COUNTR_ID:4342254,103123

¹⁴⁰ 프레시안, “국회서 논란된 ‘AI디지털교과서’ 도입 앞두고 학부모 85%가 ‘반대’” (2024. 12. 18.),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121810071335257>

¹⁴¹ 코리아타임즈, “Korea to introduce AI textbooks in 2025 despite concerns over effectiveness, digital overuse” (2024. 11. 29.), <https://www.koreatimes.co.kr/southkorea/society/20241129/korea-to-introduce-ai-textbooks-in-2025-despite-concerns-over-effectiveness-digital-overuse>

¹⁴² 메타저널, “Korea’s AI Digital Textbook Service Receives Privacy Warning for Inadequate Data Practices” (2025. 5. 15.), <https://www.metajournal.news/news/articleView.html?idxno=25931>

¹⁴³ 코리아헤럴드, “Acting president expected to veto bills on AI educational materials, education subsidies” (2025. 1. 13.), <https://www.koreaherald.com/article/10389457>

- 교원, 학부모,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강행한 AI교과서 도입을 폐기할 계획이 있습니까?
- AI교과서 도입의 법적근거는 무엇이고, AI교과서의 편향성,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보호 문제 등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수립했습니까?

56. 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 (제13조, 제14조)

장애

정부는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을 목표로 한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23~2027)’을 세웠으나, 실제 장애학생은 특수학교 내지 특수학급에 제한적으로 수용되고 있다¹⁴⁴. 2025년 2월 통과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권 강화를 목적으로 교육활동 중 긴급한 경우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와 분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¹⁴⁵. 이로 인해 장애학생을 비롯해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 등이 부당하게 폭력을 당하거나 반복적으로 교실 밖으로 내쫓길 위험이 커지고 있다.

사교육

2024년 통계청의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사교육 참여율은 80%, 주당 참여시간은 7.6시간으로, 사교육비 지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¹⁴⁶ 6세 미만 영유아도 47.6%가 사교육에 참여하며, 월평균 사교육비는 33만2천원이다.¹⁴⁷ 사교육비 지출과 참여율은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은 20만 5천원,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경우 67만 6천원으로 약 3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¹⁴⁸ 가구 소득 수준과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사교육비는 현저히 높아지고, 이러한 편차는

¹⁴⁴ 교육부가 1962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유초·중고 학생은 41.6% 감소한 반면 특수교육 대상자는 119.7%가 증가하였다. 2024년 1월 기준 통합교육을 위해 학교 내에 특수학급이 없어 장애학생이 아예 갈 수 없는 학교의 비율이 53.6%에 달했다. 약 83.4%의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분리교육(특수학급, 특수학교)을 받고 있다

¹⁴⁵ 에이블뉴스, “학생 제지·분리 법제화 초·중등교육법 개정, “학생 내쫓는 법” 규탄” (2025. 2. 27.),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064>

¹⁴⁶ 통계청,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2024). 2015년 4차 심의 당시에는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4만 4천원이었는데, 2024년 기준 평균 47만 4천원으로 10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

¹⁴⁷ 교육부, “유아사교육비 시험조사” (2024)

¹⁴⁸ 통계청,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2024),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44>

학업성적과 진학 및 이후 취업기회 등에도 차별적 효과를 가져온다.¹⁴⁹ 한편 고등교육에서의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의 66.2%에 불과하다.¹⁵⁰

- 모든 아동, 특히 장애아동도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모든 학교에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체계(물리적 공간, 통합교육 커리큘럼, 학생 지원 인력 등) 마련에 대한 시기, 예산,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있습니까?
- 학생에 대한 자의적 분리와 배제가 아니라 위기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초·중·고교육법 개정 또는 추가 입법 계획은 무엇입니까?
- 경제적 취약·소외계층의 특수한 필요를 고려하여 양질의 공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당사국이 취한 효과적 조치는 무엇입니까?
- 대학의 서열화 및 이에 따른 고용에서의 불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시정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효과적인 조치는 무엇입니까?

57. 외국인에 대한 편견 대응/문화다양성 촉진 (제15조)

한국사회 이주민은 260만명으로 급증¹⁵¹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국민의 다문화감수성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¹⁵² 국가인권위조사에서 한국사회 이주민의 인권이 존중된다는 응답은 36.2%에 불과했다.¹⁵³ 10대 청소년이 미등록이주민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는 사건¹⁵⁴이 있었으며, 이주민을 폭행하고 구금하는 인종차별조직이 등장하여¹⁵⁵ 온라인에 동영상을 공유하며 혐오를 확산하고 있다.¹⁵⁶ 최근에는 극우집단이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 중국인 혐오를 조직적으로 확산하고

¹⁴⁹ 2024년 기준 아버지가 중졸 이하인 경우 월평균 사교육비는 21만 8천원, 대학원졸 이상인 경우에는 65만 3천원, 어머니가 중졸 이하인 경우 월평균 사교육비는 18만 3천원, 대학원졸 이상인 경우에는 68만 6천원에 이른다. 통계청,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2024)

¹⁵⁰ KBS, “한국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OECD 평균 상회…초임 교사 급여는 평균 아래” (2024. 9. 10.),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56221>

¹⁵¹ 법무부 출입국통계, <https://www.moj.go.kr/moj/2412/subview.do>

¹⁵²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 전국민다문화수용성 조사” (2022)

¹⁵³ 국가인권위 보도자료, “202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 (2023. 3. 21.)

¹⁵⁴ 중앙일보, ““불법체류 신고하겠다” 협박하며 외국인 집단 폭행한 10대들” (2023. 7. 5.),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5138>

¹⁵⁵ 한국일보, ““불법체류자 색출” 무작위 검문·체포…박진재 자국민보호연대 대표 징역 1년 2개월” (2025. 1. 21.),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12115030003951>

¹⁵⁶ 국민우선tv(박진재), www.youtube.com/@TV-fx7dk

있다.¹⁵⁷ 정부는 어떤 제지도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이주민에게 한국인 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주기위한 시도¹⁵⁸를 하며 혐오를 부추긴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문화다양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27.3%에 불과하며,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은 21.7%에 불과하다.¹⁵⁹

- 일상에서의 혐오표현 및 온라인에서의 혐오 확산 제재를 위한 조치는 무엇입니까?
-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예산과 사업 확대를 위한 계획이 있습니까?

58. 문화계 블랙리스트/예술인 사회권 (제15조)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블랙리스트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특정 문화예술인에 대한 검열과 지원배제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했다.¹⁶⁰¹⁶¹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구성에서 표현의 자유 전문가가 배제되기도 했다. 2017년 구성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권고는 이행되지 않았다.¹⁶² 최근에도 한 가수가 집회에 공연을 했다는 이유로 정부행사에서 배제되기도 했다.¹⁶³ 예술인들은 지속적인 문화·예술 검열 및 블랙리스트 정책에 대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 문화예술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고,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¹⁵⁷ 경향신문, “극우들의 ‘중국 혐오’ 위험 수위…누가 그들을 부추길까” (2025. 1. 27.),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270900011>

¹⁵⁸ 경향신문, “외국인 유학생을 ‘최저임금 미만 가사노동자’로 쓰자는 윤 대통령” (2024. 4. 4.),

<https://www.khan.co.kr/article/202404041539011>

¹⁵⁹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0064

¹⁶⁰ 문화예술 검열을 제도화하고 의도적인 조사, 감사, 예산삭감, 사업폐지 등의 블랙리스트 정책으로 좌파 문화예술인의 지원 배제와 통제를 추진하고, 지역의 문화예술 생태계(영화제, 작은 서점)를 박탈하여 예술인과 시민이 스스로 자기검열 하도록 일상적인 검열 환경을 만들고, 한국예술종합학교 통제 등을 실행했다.

¹⁶¹ “좌파 이념 퇴출과 우파 이념 진흥”을 핵심으로 이명박 정부의 블랙리스트 책임자 유인촌을 문체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실행자 용호성을 제1차관으로 임명하는 등 주요 보직에 블랙리스트 실행자들을 기용하였다.

¹⁶² 2017년~2018년 한시적으로 진행되었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 권한 미비, 조사 인력 및 조사 기간의 현저한 부족, 정부·국회 등의 실행 의지 부족(2018년 관련 위원회의 예산 전액 삭감 등) 등의 이유로 블랙리스트 사태의 주요 실행-연관 기관으로 밝혀진 청와대와 국정원, 기재부, 경찰, 문체부 및 소속 기관에 대한 총체적인 조사가 전무한 상태로 마무리되었다.

¹⁶³ 세계일보, “‘윤석열 퇴진집회’ 공연이 오해 부른다?... 통일부, 하림 섭외 철회 논란” (2025. 5. 14.),

<https://www.segye.com/newsView/20250514518702>

- 표현의 자유 전문가가 배제되는 등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의 구성이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있는데, 배제된 이유와 개선방안에 관한 정보는 무엇입니까?

59.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추모 (제15조)

국가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추모를 위해 문화재를 보호하고 활용하는 법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중대한 인권침해를 상징하는 묘지, 건축물 등이 개발 등을 이유로 철거되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동두천시가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발생한 미군 기지촌 ‘위안부’의 인권침해의 증거이자 역사적 건축물인 ‘옛 성병관리소’의 철거를 강행하는 일이 발생했다.¹⁶⁴ 관련해서는 유엔 특별보고관들이 협의서한¹⁶⁵을 보내기도 했지만, 동두천시는 여전히 철거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동두천시가 추진하는 옛 성병관리소 철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고,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 중대한 인권침해의 증거가 되는 건축물 등 중대한 인권침해 관련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사례와 법체계는 무엇이 있습니까?

60. 기술의 공공성과 빅테크 탈규제 (제15조)

한국은 빅테크 플랫폼의 개인정보 독점, 알고리즘 편향, 시장지배력 남용과 관련하여 규약상 이행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가격과 콘텐츠 정책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정보 접근권과 경제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¹⁶⁶ 또한 유튜브 알고리즘은 혐오나 극단주의

¹⁶⁴ France24, “‘Monkey house’: South Korea’s US ‘comfort women’ legacy to be demolished” (2024. 10. 9.), <https://www.france24.com/en/video/20241009-monkey-house-south-korea-s-us-comfort-women-legacy-to-be-demolished>

¹⁶⁵ AL KOR 4/2024,

<https://spcommreports.ohchr.org/TMResultsBase/DownloadPublicCommunicationFile?gId=29371>

¹⁶⁶ 구글은 안드로이드 OS의 높은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플레이 스토어’와 같은 앱마켓 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끼워팔기 함으로써 동영상 및 음원 서비스 시장 그리고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가져갈 수 있었다. 유튜브는 일정 수준의 구독자를 보유하지 못한 크리에이터들의 동의 없이 광고를 붙일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였고, 프리미엄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시청자들을 대상으로는 지나치게 많은 광고를 보게 하였으며, 실질적으로 음원 서비스를

콘텐츠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데, 2024년 한국의 계엄령 사태를 촉발하고¹⁶⁷ 이후 여론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다.¹⁶⁸ 동시에 시민단체와 이용자의 유튜브 채널을 명확한 설명 없이 삭제하고 적절한 이의제기 수단을 제공하지 않아¹⁶⁹ 표현의 자유와 문화권을 침해하고 있다. 또한 딥페이크 등 유해 콘텐츠에 대한 플랫폼의 미온적 대응은 정보 유통의 핵심 주체로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¹⁷⁰ 이에 대해서도 한국은 이행의무에 따라 감독과 통제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플랫폼의 알고리즘 편향을 규제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 빅테크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통제하고 책임성을 확보할 제도 마련 계획이 있습니까?

제공하면서도 동영상 서비스라는 형태를 표방하며 음원 저작권료를 불공정하게 분배하기도 하였다. 민주연구원, “플랫폼 독과점 실태분석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경제 생태계 구조개선 방안 연구” (2024),

<https://idp.theminjoo.kr/party/sub/news/view.php?brd=171&post=2119>

¹⁶⁷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를 가까이하며 ‘필터버블’에 갇혀 이들의 음모론을 사실로 믿은 것이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이라고 짚었다. 한겨레, “극우 유튜브에 빠진 윤석열 ‘내란의 기원’” (2024. 12. 19),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3878.html

¹⁶⁸ BBC는 2025년 1월 기사에서 계엄령 사태 이후 한국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유튜브 정치 채널들이 어떻게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했는지를 다뤘다. 보수·진보 양 진영 모두 시위 현장을 실시간 생중계하며 구독자와 수익을 늘렸고, 시청자들은 후원 기능(슈퍼챗)을 통해 이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확증편향을 강화하고, 알고리즘이 극단적인 콘텐츠를 증폭시키며 전통 언론의 기능을 대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BBC, “‘대통령도 보는 생중계’ 유튜브는 누구... ‘해장국’인가 확증편향인가” (2025. 1. 10.),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391kv8dyl1o>

¹⁶⁹ 2024년, 한국의 시민사회단체 여러 곳은 유튜브 채널이 사전 통보 없이, 명확한 사유도 없이 삭제되었다고 보고했다. 해당 채널들은 유튜브 정책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삭제되었으며, 구글 글로벌 인권정책팀에 공동으로 공식 문제제기를 한 뒤에야 복구되었다. 이 사례는 지배적인 플랫폼 사업자의 콘텐츠 조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절차적 권리가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표현의 자유와 시민 참여에 위축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었다. 공동논평.

“시민사회단체 유튜브 채널 구체적 이유 통보 없이 삭제, 구글 글로벌 인권정책팀에 문제제기하자 채널 복구” (2025. 5. 21.), <https://act.jinbo.net/wp/50562/>

¹⁷⁰ 한국 여성 대상 딥페이크 영상 유포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텔레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뒤에야 관련 콘텐츠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매우 늦었고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례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의 법적 책임 및 규제 강화가 시급함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Business & Human Rights Resource Centre, “S. Korea: Telegram vows to national media regulator to take strict action against deepfake content involving Korean women” (2024. 9. 30.),

<https://www.business-humanrights.org/en/latest-news/s-korea-telegram-commits-to-strict-action-against-deepfake-content-involving-korean-women/>